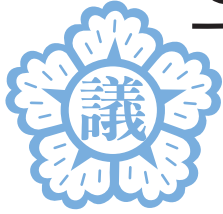


발 간 등 록 번 호

11-1312000-000112-01

#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 가이드



지방의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기본사항 안내서



지난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된 이래  
지방의회는 진정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민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고, 자율과  
책임이 조화되는 건전한 지방자치를  
발전시키는데 공헌을 해 왔다.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  
확대에 맞추어 지방의회의원들의 의정  
활동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안전행정부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 발간사

6.4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의회의원들이 새로 선출되고 제7기 지방의회가 개원하여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된 이래 지방의회는 진정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민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고, 자율과 책임이 조화되는 건전한 지방자치를 발전시키는데 공헌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 확대에 맞추어 지방의회의원들의 의정 활동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전행정부에서는 지방의회의원 여러분들이 보다 원활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필요한 기본정보를 담아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 가이드(e-book)』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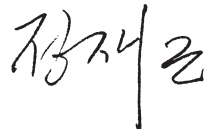
본 가이드는 지방자치의 개요, 지방의회의 기능, 지방의회의원들의 역할과 지방의회를 둘러싼 다양한 관계 등 지방자치 전반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 참고할 만한 자료와 다양한 추가 정보들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구성·편집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책자가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의회에 관심있는 모든 분들에게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2014년 10월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장



# CONTENTS

## I

### 지방자치 개요

5

## II

### 지방의회의 역할과 운영

15

- 1. 지방의회의 구성 16
- 2. 지방의회의 역할 20
- 3. 지방의회의 운영 48

## III

### 지방의회의원의 권한과 의무

53

- 1. 지위 및 신분변동 54
- 2. 지방의회의원의 권한 57
- 3. 의무 63

## IV

### 지방의회와 주변 환경

67

- 1. 지역주민 68
- 2. 지방자치단체간 협력 76
-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 80

## V

### 부록

87

- 1. 참고자료 및 정보 88
- 2. 주요 용어 정리 89
- 3. 공직선거법상 지방의회의원의 주요 행위기준 92
- 4. 지방의회 회의규칙 표준안 93

---

# I

## 지방자치 개요



## I. 지방자치 개요

## 01

## 지방자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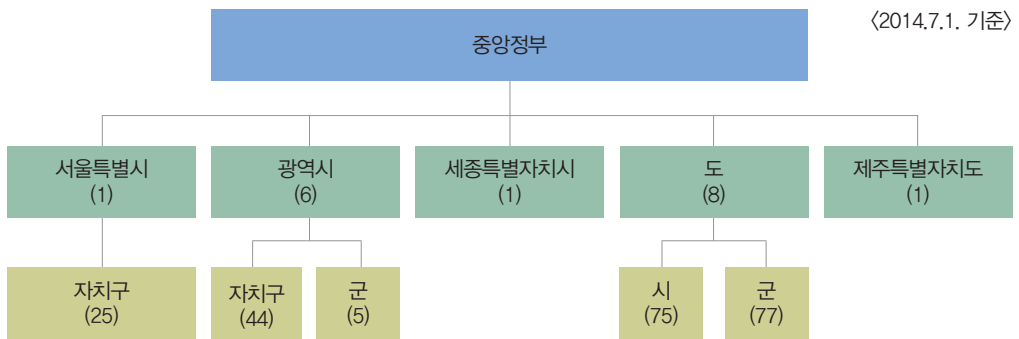
## 01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사무

- ⚙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17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226개의 시·군·자치구가 있음

» 자치구는 법령에 따라 시·군과 자치권의 범위를 다르게 규정

※ 세종특별자치시('12년 출범), 제주특별자치도('06년 출범)는 1계층 구조임



- ⚙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 증진, 지역개발, 교육·문화·체육·예술의 진흥, 지역민방위 및 소방, 구역·조직·행정관리 등의 사무를 처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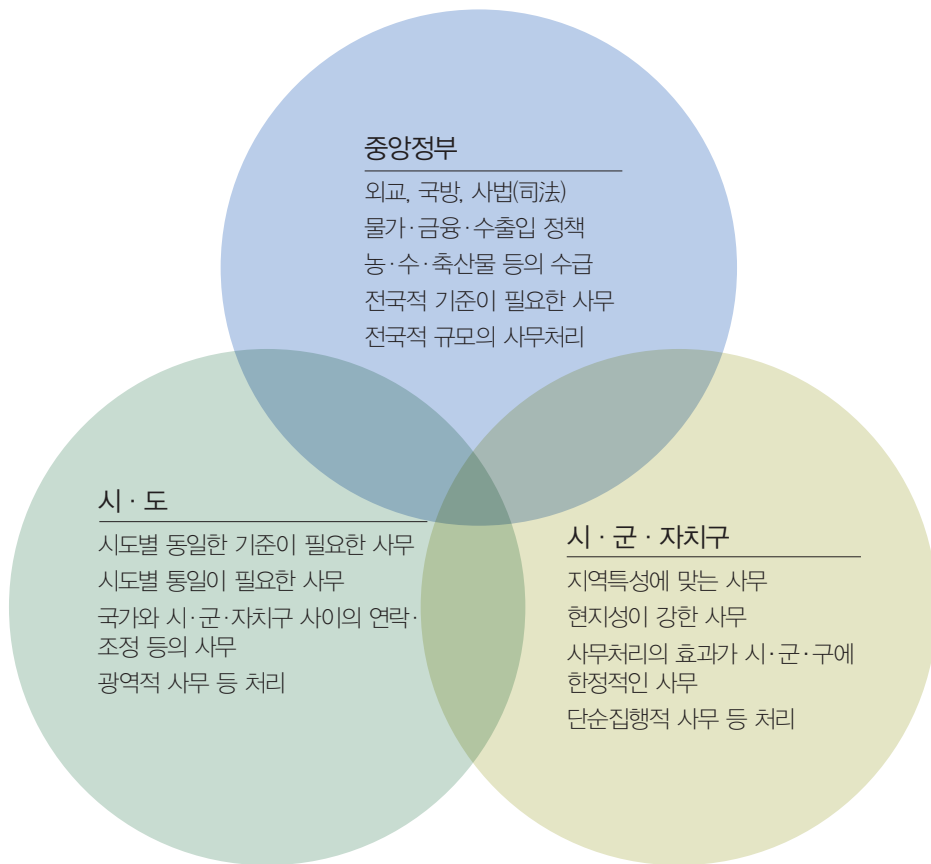
» 시·도는 종합계획 수립·조정·지도 등 수행

» 시·군·자치구는 세부 시행계획 수립·집행 등 수행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따라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함

- »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도 사무의 일부를 직접 처리
    - ※ 도시계획사업,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지적측량검사 등
  - » 시·군과 다르게 자치구 사무의 일부는 특·광역시가 처리
    - ※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 상·하수도 설치·관리 등
    - ☞ 지방자치법상 사무배분 세부 기준은 <참고1> 참조
- ④ 국가는 외교, 국방, 사법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와 물가정책, 금융 정책 등 통일적이고 전국적 규모의 사무를 처리함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 〉



## 02 지방자치단체의 구성

-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으로 구성됨
- ⊗ 지방의회는 의장·부의장(시·도 2명, 시·군·구 1명)을 선거로 선출(임기2년)하고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함
  - » 조례안, 예산안, 결산 등 주요안건 심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정책 및 방침을 결정함
  - » 예산안 심의·확정, 결산 승인, 기금 설치·운용,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공공 시설의 설치·처분 등을 통해 지방재정을 통제함
  - » 행정사무 감사와 조사로 집행기관 견제 등의 기능을 수행함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집행함
  -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총괄, 국가위임 사무의 관리·집행, 소속 직원 임면·교육 훈련·복무·징계 및 지휘·감독하고 있음
  - »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 제정 권한이 있음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보조할 부단체장 임명(제청)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설치 가능함
    - ※ 시·도에 교육·학예에 관한 별도의 집행기관으로 교육감이 있음
- ⊗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의결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행에는 관여하지 못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가 의결한 정책을 집행하지만 지방의회의 의결에는 관여하지 못함
  - » 기관 상호간 견제와 균형을 기본원리로 하여 서로 독립관계를 유지하면서 상호 보완 및 통제하고 있음

###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주요 권한〉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안의 발의(법 §66)</li> <li>•의결(법 §3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례의 제정·개폐</li> <li>- 예산의 심의·확정</li> <li>- 결산의 승인</li> <li>- 사용료·수수료·분담금 등의 부과·징수</li> <li>- 예산외 의무부담 등</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자치단체의 통할대표(법 §101)</li> <li>•의안의 제출(법 §66)</li> <li>•사무의 관리 및 집행(법 §103)</li> <li>•예산안의 편성·제출(법 §127)</li> <li>•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법 §131)</li> </ul>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사무감사·조사(법 §41)</li> <li>• 서류의 제출요구(법 §40, §41④)</li> <li>• 청원의 심사와 처리(법 §75)</li> <li>• 의회사무직원의 임명 추천(법 §91)</li> <li>• 선결처분의 사후 승인(법 §109)</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시회의 요구(법 §45)</li> <li>• 위원회 개최 요구(법 §61)</li> <li>• 의회사무직원의 임명(법 §91)</li> <li>• 조례안의 재의요구(법 §26)</li> <li>• 선결처분(법 §109)</li> </ul>

## 03 지방 재정

-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세외수입 등 자체재원과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국가가 지원해 주는 재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일정한 행정수준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을 지원함
- ⊙ 지방 재정은 일반행정에 대한 자치를 관할하는 일반재정과 교육에 대한 자치를 관할하는 교육재정으로 구분됨
- ⊙ 지방자치단체 일반재정은 일반회계, 특별회계(지방공기업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으로 구성되고 중앙정부의 재정구조와 유사함

  - » 일반회계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적인 행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회계임
  - » 특별회계는 특별자금이나 특정사업 운영을 위해 별도로 설치됨
- ⊙ 지방교육재정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를 별도로 경리하기 위해 일반재정과 구분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운영됨
- ⊙ 지방재정 규모는 163.5조원('14년 예산순계)으로 국가 재정의 33%에 해당됨

  - » 사회복지 28.5%, 인건비 16%, 환경 9.9%, 교통 9.3% 등 순으로 지출함

## 04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으로 규정함
- ⊗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인건비(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범위에서 정원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인구, 재정여건, 하부기관 수 등에 따라 1~3%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별 긴급한 행정수요 등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함

## 05 지방공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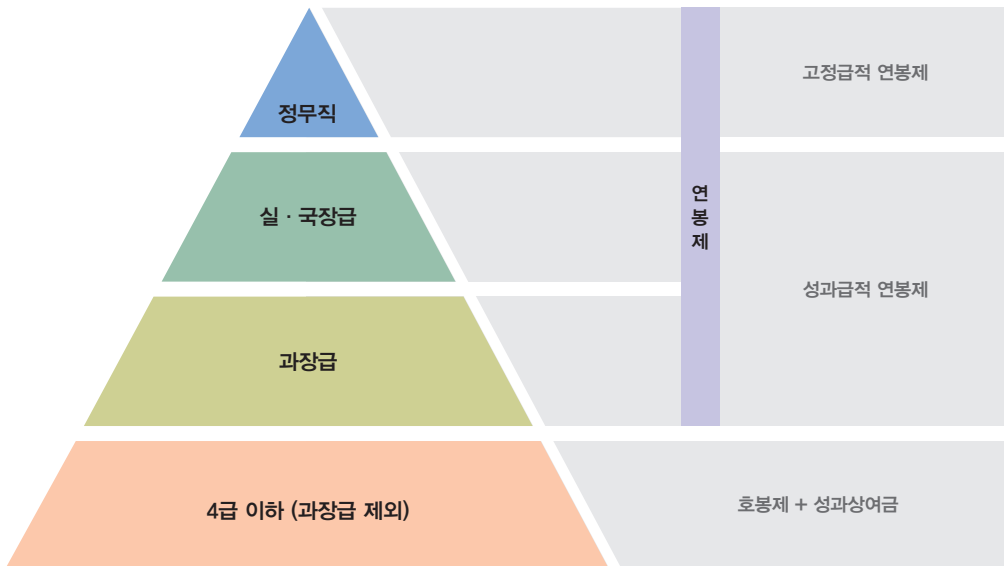
- ⊗ 지방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됨
  - » 경력직공무원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는 직업공무원으로 일반직공무원과 특정직공무원으로 나눔
  - » 특수경력직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정무직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이 이에 해당됨

### 지방공무원 구분

- ❖ **일반직** 행정(세무·전산·사회복지 등), 기술(공업·농업·녹지 등), 연구·지도직 공무원
- ❖ **특정직** 공립대학의 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지방소방공무원
- ❖ **정무직**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도교육감, 지방의회의원
- ❖ **별정직** 비서·비서관, 정무부지사

- ⊗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소속공무원의 임용 및 휴직·면직과 징계 등의 권한(임용권)을 가짐
  - » 소속공무원의 임용권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기관의 장, 지방의회 사무처장 등에 위임 할 수 있음

- ⊙ 지방공무원 보수는 봉급과 수당으로 구분되며, 4급 이하(과장급 제외)는 호봉제, 4급 과장급 이상은 연봉제를 적용함
- ※ 단, 연구·지도직, 소방직, 교원은 연봉제 미도입
- » 직무여건과 생활여건 등에 따라 32종의 수당 및 4종의 실비보상 지급



## 참고 지방자치법상 사무배분 세부 기준

국가사무(제11조)	지방자치단체 사무(제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교, 국방, 사법(司法), 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li> <li>▶ 물가정책, 금융정책, 수출입정책 등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사무</li> <li>▶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조절과 수출입 등 전국적 규모의 사무</li> <li>▶ 국가종합경제개발계획, 국가하천, 국유림, 국토종합개발계획, 지정항만, 고속국도·일반국도, 국립공원 등 전국적 규모나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li> <li>▶ 근로기준, 측량단위 등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무</li> <li>▶ 우편, 철도 등 전국적 규모나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li> <li>▶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검사·시험·연구, 항공관리, 기상행정, 원자력 개발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술과 재정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li> <li>▶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주민복지, 노인, 전염병, 청소 등)</li> <li>▶ 농림·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사무(농업용수시설, 중소기업 육성 등)</li> <li>▶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li> <li>▶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유아원, 도서관, 지방문화재 등)</li> <li>▶ 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li> </ul>	
	지방자치단체간 사무배분(제10조)	
	시·도사무(제10조)	시·군·자치구 사무(제1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처리 결과가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li> <li>▶ 시·도 단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사무</li> <li>▶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시·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무</li> <li>▶ 국가와 시·군 및 자치구 사이의 연락·조정 등의 사무</li> <li>▶ 시·군 및 자치구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에 부적당한 사무</li> <li>▶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규모의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사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도가 처리하는 것 이외의 사무 ※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경우 도의 사무 중 일부 직접처리</li> </ul>

## 참고2 지방자치 관련 법령 체계도

<b>헌 법</b>	<p><b>제117조</b>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p> <p><b>제118조</b> ①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p>		
<b>지방자치법</b>			
<b>총 강</b>	관할구역 (§4①) 사무·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치단체 설치 관련 법률 등      *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부령)</li> <li>■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li> </ul>	
<b>주 민</b>	투 표 (§14②)	■ 주민투표법	
	소 환 (§20②)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b>선 거</b>	단체장·의원 (§29)	■ 공직선거법	
<b>집행 기관</b>	기구·정원 (§112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li> <li>■ 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법률</li> </ul>	
	지방공무원 (§112④)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공무원법</li> <li>■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li> </ul>	<p><b>(임용)</b>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지방연구·지도직 공무원 임용규정, 지방자치 단체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 규정</p> <p><b>(보수)</b>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규정</p> <p><b>(복무)</b> 지방공무원 복무규정</p> <p><b>(징계·소청)</b>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p>
		<p>* 정당법(정당가입 금지)</p> <p>*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운영 등에 관한 법률(정치활동 금지 등)</p>	
	교육 (§121②)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b>재 무</b>	지방재정 (§145)	■ 지방재정법      *06.1.1 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li> <li>■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li> <li>■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li> </ul>
		■ 지방교부세법	
	지방공기업 (§146②)	■ 지방공기업법	
	지방세 (§135)	■ 지방세법      *11.1.1 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세기본법</li> <li>■ 지방세특례제한법</li> </ul>
<b>국가 지도·감독</b>	감사 (§171조의2③)	■ (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규정	
<b>특 례</b>	서울 (§174①)	■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제주 (§174②)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세종 (§174②)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 가이드

지방의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기본사항 안내서

# II

## 지방의회의 역할과 운영



1. 지방의회의 구성    2. 지방의회의 역할    3. 지방의회의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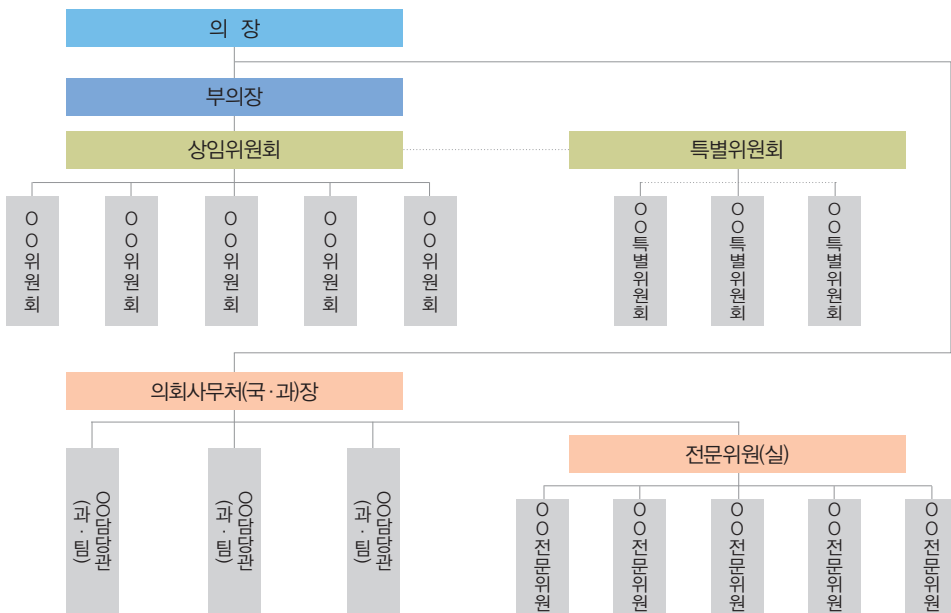
II. 지방의회의  
역할과 운영

01

# 지방의회의 구성

## 01 의회의 구조

- ⚙ 지방의회는 주민이 직접 선출한 지방의회의원으로 구성됨
  - » 의장,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함
- ⚙ 지방의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음
  - » 위원회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가 있음
- ⚙ 지방의회는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들의 회의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기구를 두고 있음
  - » 시·도의회는 사무처를 두고 시·군·구의회는 사무국(과)을 두고 있음





## 02

## 의장·부의장

- ⊗ 시·도의회는 경우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 시·군·자치구의회는 경우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함
  -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됨
- ⊗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함
  - »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잔임 기간임
- ⊗ 의장 또는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음
- ⊗ 의장 또는 부의장의 사임은 의장이나 부의장의 지위를 사퇴하는 것으로 그 사임에는 의회의 동의를 필요함

## 지방의회 의장의 권한(역할)

- ❖ 의회의 대표자 및 회의의 주재자로서 의장의 주요 권한은
  - ① 의회 대표, ② 의사 정리, ③ 질서 유지, ④ 사무 감독 등으로 구분
- ❖ 기타 권한으로는
  - ① 의원이 제출한 5일 이내 청가의 허가, ② 폐회기간 중 위원장 사임의 허가, ③ 폐회기간 중 의원 사직의 허가, ④ 확정된 조례안이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아니 할 때 공포, ⑤ 위원회에 출석과 발언 등이 있음

## 03

## 위원회

## 01 상임위원회

- ⊗ 상임위원회는 의회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본회의에 앞서 이를 사전심사하기 위한 상설화된 위원회를 말함
  - » 지방의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음

- ⚙️ 위원회의 역할은 예비적 심사기관으로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본 회의에 보고하여 본회의의 판단자료를 제공하는데 있음
- ⚙️ 상임위원회의 종류는 당해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업무적 특성을 고려해야 함
  - ※ 시군구의회 : (종전)의원 13인 이상 상임위 설치 → (현재)조례로 자율화('06.4 개정)
- ⚙️ 지방의회에 상임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일반적으로 지방의회 의원은 하나의 상임 위원회 위원이 됨

#### 교육·학예 관련 상임위(교육위원회)

- ❖ 교육위원회는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로 구체적인 명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함
  -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장(교육위원회)이 '14.6.30. 효력이 만료됨에 따라 교육위 의무화가 폐지되고, 지방자치법 제56조에 따라 조례로 정함

## 02 특별위원회

- ⚙️ 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이 아니거나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부적당한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둘 수 있는 한시적 성격의 위원회임
  - » 특별위원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됨
- ⚙️ 특별위원회의 위원정수를 몇 명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의안의 내용에서 결정됨
  - » 특별위원회의 수는 제한이 없으며 여러 개의 특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원 1인이 2개 이상의 특별위원회 위원도 가능함

# 04

## 사무기구

- ⊙ 지방의회에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 회의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무기구를 두고 있음
- ⊙ 시·도의회는 사무처를 두고 시·군·자치구의회는 사무국(과)을 둠
  - » 사무처(국·과)장은 의회사무의 전결권의 범위 안에서 권한을 행사하고 그 대표권은 의장을 통해서만 행사함
  - » 사무처(국·과)장의 보좌기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규모나 재정형편 등에 따라 각각 조례로써 다양하게 구성됨
    - ※ 의회사무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과는 구별

의회사무기구명	설치대상
의회사무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의회사무국	지방의회의원의 정수가 10인 이상 시·자치구
의회사무과	군 및 지방의회의원의 정수가 10인 미만인 시·자치구

- ⊙ 전문위원은 의회사무기구 소속 공무원이며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그 밖의 소관사항 등을 검토하며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등의 기능을 수행함
  - »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의안심사와 의사진행을 보좌하며,
  - » 그 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사무처장·의회사무국장 또는 의회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음
- ⊙ 의회사무직원은 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며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함
  - » 의회사무직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이므로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등에서 집행기관의 공무원과 동일한 적용을 받음

II. 지방의회의  
역할과 운영

02

# 지방의회의 역할

## 01 개요

- ⊗ 지방의회는 주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 지방의회의원으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 기관임
- ⊗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는 조례 제·개정, 예산 심의·의결 및 결산 승인 등 각종 의안의 심의·의결,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청원의 심사·처리 등의 권한이 있음
  - » 지방자치법 이외의 개별법령에서도 지방세 감면 의결, 도시계획 수립·변경의 의견 제시 등 권한이 부여되어 있음
    - ☞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법상 권한 및 개별법령상 권한은 <참고> 참조
- ⊗ 지방의회의 권한은 지방자치법과 기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기의 권한에 속하는 것을 정당한 절차를 거쳐 행사할 때만 유효함
  - » 법령 등에서 주어진 권한을 일탈하거나 절차상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의결을 하였다면 그러한 의결은 무효임
    - ※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사권 행사에 사전적,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불가(2009주53 판결)
- ⊗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주체와 상호작용을 하며, 각 주체별로 다양한 역할이 요구됨



## 참고

## 지방의회의 권한

## ■ 지방자치법상 권한

- 일반적 의결사항(자치법 제39조①항)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개별적 의결사항
  - 지방자치단체의 폐지·분합, 구역변경, 명칭변경에 관한 의견제출(제4조②항)
  -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신설(제6조②항)
  - 서류제출 요구(제40조)
  -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의 발동(제41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결처분의 승인(제109조)
  - 보증채무 부담행위(제124조), 계속비(제128조)
  - 예비비 지출의 승인(제129조)
  - 행정협의회 설립규약의 변경·폐지(제152조②항 및 제158조)
  -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규약 변경 및 해산(제159조①항 및 제164조)
-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음(자치법 제39조②항)

## ■ 개별 법령상 권한

### ○ 의결

권한 내용	법령명	비고
재산세 도시지역 지정	지방세법(112조①)	의결
지방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4조)	의결
세입의 조상충용	지방재정법(7조③)	의결
지방자치단체 및 조합의 지방채 발행	지방재정법(11조)	의결
보증채무부담행위 및 변경사항	지방재정법(13조)	의결
일시차입금 범위결정	지방재정법(14조①)	의결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지방재정법(18조②)	의결
계속비사업	지방재정법(42조)	의결
채무부담행위	지방재정법(44조①)	의결
세출예산의 장·관·항 사이의 상호이용	지방재정법(47조①)	의결
세출예산의 명시이월	지방재정법(50조①)	의결
재정위기단체의 지방채 발행 제한	지방재정법(55조의4)	의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10조①)	의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8조②)	의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11조②)	의결
지방공기업 예산안의 의결	지방공기업법(26조①)	의결
지방직영기업의 중요재산 취득·처분	지방공기업법(40조①)	의결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지방공기업법(54조②)	의결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지방공기업법(65조의3)	의결
출자법인의 지분을 변동 행위	지방공기업법(77조의4, ④)	의결
채무보증	신발전지역육성을위한투자촉진법(29조①)	의결
국토교통부장관의 유료도로 신설 및 개축	유료도로법(5조)	의결

○ 동의

권한 내용	법령명	비고
국가의 지자체 소유 공유재산 무상사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18조)	
천재·지변 입은 주민에 대한 사용료 면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24조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부료 면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34조②)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공유재산의 교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39조①)	

○ 승인

권한 내용	법령명	비고
지역개발기금조성을 위한 지역개발채권 발행	지방공기업법(19조②)	
지방직영기업의 결산	지방공기업법(35조③)	
개발부담금 지자체 귀속분 감면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7조④)	

○ 의견청취

권한 내용	법령명	비고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15조)	
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총량 설정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11조②)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3조③)	
역세권개발구역의 지정	역세권의개발및이용에관한법률(6조①)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시행령(7조①)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변경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13조②)	
금융중심지의 지정	금융중심지의조성과발전에관한법률시행령(4조)	

○ 보고

권한 내용	법령명	비고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실효 등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48조③)	

## 02 조례의 제·개정

### 01 범위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 법령의 범위 안

» ‘법령의 범위 안에서’의 의미는 반드시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법령에 위반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를 의미하므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는 효력이 없음

#### 조례 제정이 법령 위반 등에 관한 판례

- ❖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는 것이고, 조례가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법령의 규정취지, 목적 및 효과 등을 비교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임(2008추32 판결)
- ❖ 조례에서 규율하려는 내용이 법령에 없는 경우 급부행정의 경우 상위법령에서 별다른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치사무의 경우라면 조례 제정이 가능(2007추42 판결)

####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위임사무 포함)를 처리하므로 이러한 사무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

#### 당해 지방자치단체 사무가 아닌 사항을 조례로 정한 사례

- ❖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묘지 등의 허가는 도의 사무이고 시·군에서 그 사무를 규율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음(95추35 판결)

» 국가사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는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조례로 규정할 수 없음



⊗ 주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이나 벌칙 규정 시 법률의 위임

- » 자치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도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

법률의 위임없이 의무부과 및 벌칙을 제정한 사례

❖ (조례명) ○○도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 무효확인

- (판결요지) 도시계획법령의 위임없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이 ○○도의회에 심의할 안건과 그 회의결과를 사전·사후에 보고” 하도록 규정한 것은 조례로 정할 수 없는 의무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위법(93추144 판결)

❖ (조례명) ○○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무효확인

- (판결요지) 구립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 등 연령제한 규정은 법률의 위임이 필요한 사항으로 법률의 위임없이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어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음 (2007추134 판결)

⊗ 집행기관과 의결기관과의 권한 분리와 배분 원칙

- » 조례의 규율범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은 서로 분리하여 각각 고유의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
- » 조례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전속적인 권한을 제약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권한의 분리와 배분의 원칙에 위배됨

권한 배분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 판례

❖ (조례명) ○○시 외국인투자유치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무효확인

- (판결요지) 시의원을 협의회의 위원으로 추천하여 시장이 임명하도록 한 규정은 시장의 인사권에 사전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하여 시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2007추158 판결)

## 02 절차

조례는 ① 조례안의 발의, ② 입법예고, ③ 심의·의결, ④ 이송 및 보고, ⑤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제·개정됨

### ⚙️ 조례안 발의

»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함

### ⚙️ 입법예고

»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제43조에서는 조례·규칙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20일 이상 입법예고를 하도록 하고 있음

» 입법예고 후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도록 규정함

※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 기간은 40일이나 조례·규칙은 20일 이상으로 종전과 같음

### ⚙️ 심의·의결

» 지방의회 의장이 조례안을 소관 위원회에 회부, 심사를 거침

» 조례안 본회의 심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서 제출 후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함

### ⚙️ 이송

» 지방의회 의장은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의결되면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함

※ 조례는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 시·도지사는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그 전문을 첨부하여 각각 보고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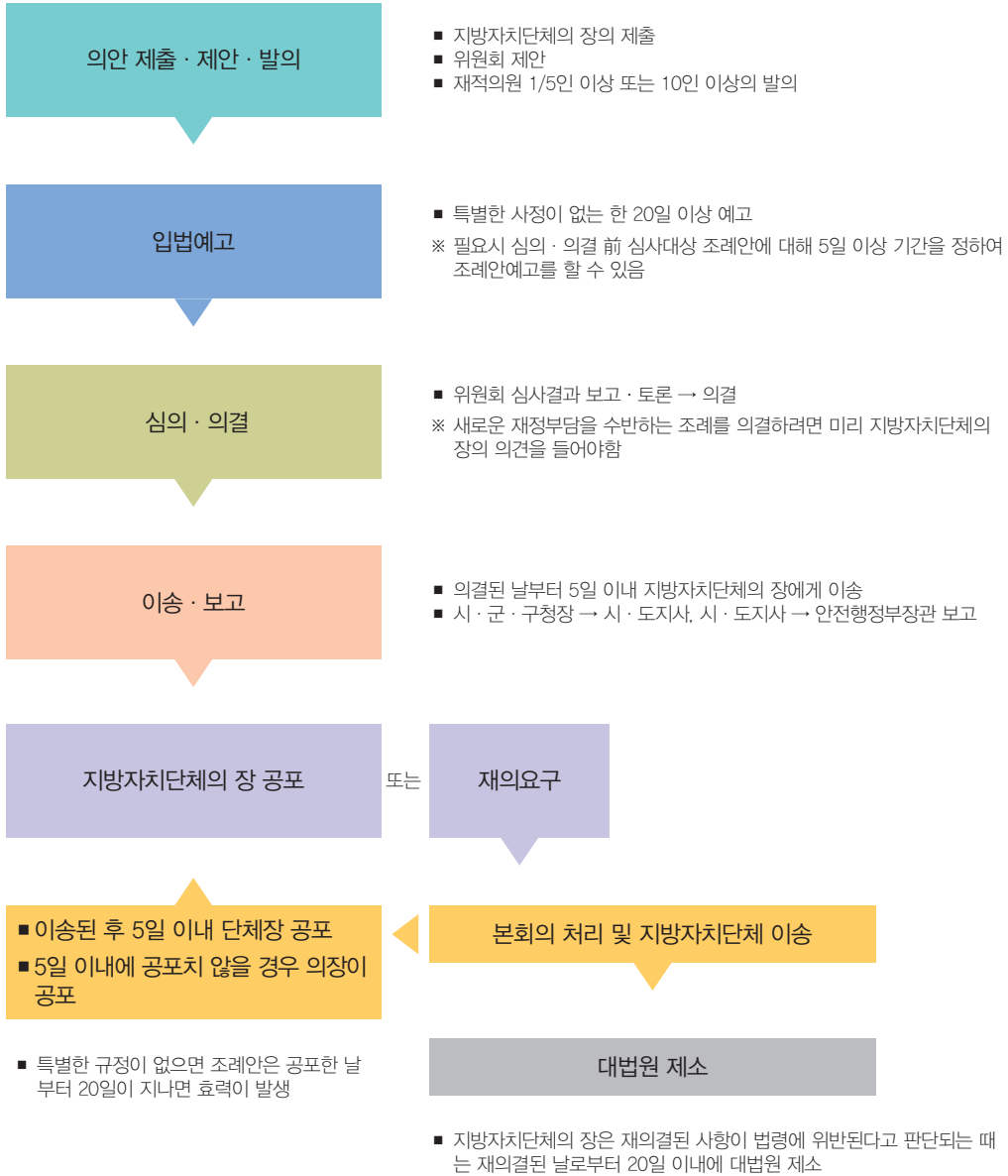
### ⚙️ 공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안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포함

» 재의요구된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확정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 이송된 조례를 지체 없이(5일 이내) 공포하지 않으면 의장이 공포함

» 조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함

### 〈 조례안 제·개정 절차 〉



### 03 재의요구 및 제소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법령위반 등 이의가 있으면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음

구 분	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의가 있는 경우	지방의회 의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의가 있는 경우	지방의회 의결에 대해 상급기관장이 이의가 있는 경우
관련 조문	▶지방자치법 제26조	▶지방자치법 제107·108조	▶지방자치법 제172조
재의 요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의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월권, 법령위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7조) ▶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경비 포함, 의무적 부담 경비와 응급복구비를 삭감하는 경우 (제108조)	▶주무부장관(시도지사)이 법령위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의 요구권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좌 동	▶주무부장관(시도지사)의 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의 장
재의 요구기간	▶조례안을 이송 받으면 20일 이내	▶의결사항을 이송 받은 날 부터 20일 이내	▶재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의결사항을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재의 회부기간	▶재의 요구서가 도착한 날부터 10일 이내 (영 제71조)	▶좌 동	▶규정 없음
일부·수정 재의 요구	▶불 허	▶불 허(시행령 제71조)	▶규정 없음
재의결 정족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2/3이상 찬성	▶좌 동	▶좌 동
대법원 제소	▶규정 없음 * 판례는 인정 (99추23 판결)	▶재의결사항이 법령에 위반 된다고 인정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대법원 제소	▶재의결사항이 법령에 위반된 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 부터 20일 이내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대법원 제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소 하지 않을 경우 주무부장관 (시도지사)이 제소지시 또는 직접 제소
집행정지		▶집행정지결정 신청 가능	▶좌 동

〈 개별 상위법령의 규정내용 위반 〉

- (조례명) ○○광역시시세 감면 조례('07.9.18)
  - (이유 및 판결요지) 동 조례안 제27조의3(지방세 감면계산의 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위반 및 지방세법상 허가 절차를 위반하는 등 상위법령에 위배되어 위법함(2007추172 판결)
- (조례명) ○○도 의회사무처 설치 조례('11.2.23)
  - (이유 및 판결요지) 지방의회 의원에 대하여 계약직공무원인 정책연구원을 두는 것은 개별 지방 의회의 조례로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 법률로 규정하여야 할 입법사항인 것으로 위법함(2011추49 판결)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닌 사항을 규정 〉

- (조례명) ○○광역시 민간투자사업심의회 운영 조례('07.10.8)
  - (이유 및 판결요지) 동 조례안 제10조의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규정은 지방자치법 상의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위배하여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2007추141 판결)

〈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 벌칙 규정 〉

- (조례명) ○○○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조례('06.4.20)
  - (이유 및 판결요지) ○○○도 이외의 곳에서 등록된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도 내에서 영업을 금지하는 규정은 법률의 위임없이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무효(2006추52 판결)

〈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권한분리 및 대표제 원리 위반 〉

- (조례명) ○○구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 (이유 및 판결요지) 당해 동 구의원 개인이 주민자치센터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방의회 의원의 법령상 권한 범위를 넘어 법령에 위반(2001추64 판결)

☞ 추가적 사례는 “재의·제소 조례 모음집<행정안전부, 2011>”참조

## 04 조례 제·개정 지방의회의원의 역할

⊗ 지방의회의원은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음

»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함

※ 지방자치법 제58조는 지방의회의원, 지방의회 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조례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 〈 지방의회의원의 조례 제정안 발의과정 〉

구 분	지방의회의원이 해야할 사항
정책/사업 문제파악	조례의 제·개정 필요성 파악
조례 제·개정 대상여부 검토	조례 제정 대상이 당해 지자체의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인 경우에 조례안 발의가능
자료수집	전문가, 공무원,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청취
	자료수집 (현황, 통계, 입법례, 관계법령 등)
조례안 입안 및 검토	조례안 입안(설계)
	법령위배 여부 검토
	집행기관(공무원)과 협의
	이해 관계인/단체의 의견수렴 및 조정
조례안 초안 작성	초안작성 및 재검토
	집행기관 또는 전문가 협의

지방의회에 발의

### 조례 제정으로 확대 시행된 주요 정책사례

- ❖ 청주시가 최초로 제정한 행정정보공개조례('92.1)는 전국적인 정보공개 조례 제정의 확산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96.12) 제정의 계기가 됨
- ❖ 부천시 담배자판기설치금지조례('92.7.26)는 상위법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의 금지규정 개정과 조례로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기여함
-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제한)에 근거하여 대규모점포(SSM)의 영업시간의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함
- ❖ 경남도에서는 조례로 진주의료원을 해산('13.9.25)한 바 있음

◎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안에 대해 심의함

- » 조례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사업)을 조문화 한 것이므로 조문에 규정되어 있는 정책과 사업 내용의 문제와 이를 집행할 경우에 예상되는 효과 및 문제점에 대해 검토해야 함
- »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신중하고 충분하게 주민의 의사를 들어야 하며, 다른 법령과의 관계도 파악해야 함
  - ※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동일 혹은 유사 조례를 활용하여 심사시 활용
- » 조례를 시행할 때 새로운 재정부담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당해 자치단체 재정 여건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 ☞ 조례 제정으로 인한 예산 소요액,财源의 종류, 국고 및 시·도 보조금 지원 여부, 财源조달 가능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함
- » 조례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 법규이므로 주민이 알기 쉽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는지 유의할 필요가 있음
- » 조례안의 내용에 따라 주민·지역 간 이해관계가 대립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전문가 및 이해 관계자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의 개최 여부를 판단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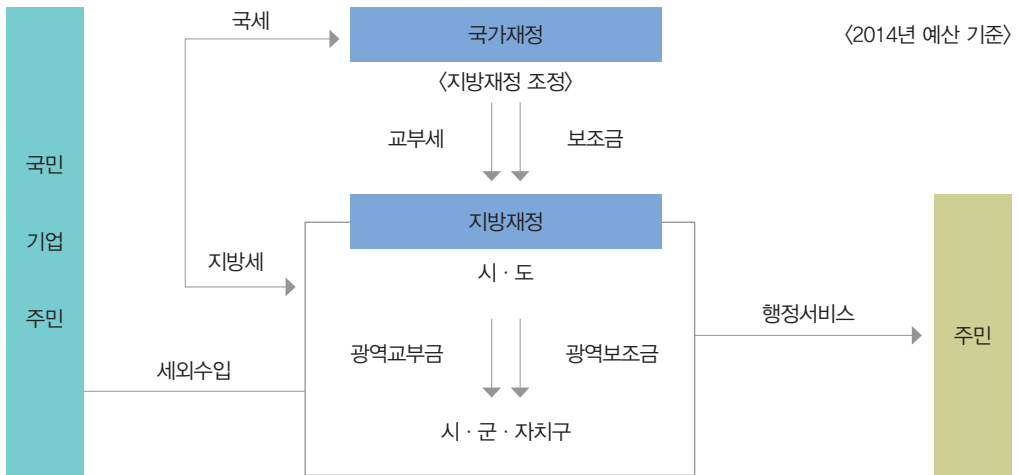
조례안 심사 시 주요 확인사항

- ❖ 조례 재·개정의 필요성, 사유 및 효과성 등을 검토
- ❖ 법령 및 상위조례 위배 여부
- ❖ 주민, 지역 및 집행기관의 입장에서 판단
  - 주민의 경제적 부담 여부
  - 주민 상호 간 및 지역 간 형평성 여부
  - 집행기관의 의견 참고
- ❖ 조례에 포함된 행정 절차 및 규제의 과다 여부 확인
- ❖ 단체장의 재량권, 예외규정(단서규정), 시행규칙에 위임한 범위 확인
- ❖ 조례시행 시 예상되는 다양한 파급효과 등을 검토

## 03 예산 심의 및 결산 승인

### 01 지방재정 개요

#### ■ 지방재정 구조



-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세외수입을 자체 재원으로 하고 정부부문으로부터 이전되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함
- ⊗ 지방자치단체 일반재정은 일반회계, 특별회계(지방공기업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으로 구성됨
  - » **일반회계**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적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회계임
  - » **특별회계**는 특정목적 달성을 위해 특정한 세입으로 세출을 충당하며 법령과 조례에 따라 설치(지방공기업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됨
  - »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 제약에서 벗어나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영하는 특정자금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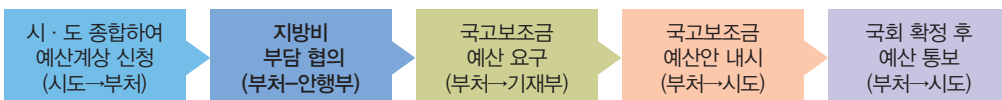
## ■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 ⊗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 내의 주민, 재산, 수익 등에 대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로서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의 근간임
- ⊗ 지방세는 11개 세목으로 구성됨
  - » 도세(6개) vs. 시·군세(5개) / 특·광역시세(9개) vs. 자치구세(2개)
    - ☞ 지방세 과목구조는 <참고2> 또는 “지방세구조”(재정고 홈페이지<lofin.mopas.go.kr>) 참조
- ⊗ 지방세외수입은 수수료, 임대수입 등 지방세를 제외한 자체수입임
  - » 지방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사용료, 수수료, 사업수입, 징수교부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등)으로 구분
    - ※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은 80:20으로 지방세가 전체 조세의 20% 수준임

## 02 지방재정조정제도

### ■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국가→지방)

- ⊗ 지방교부세
  - »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세 수입의 일부를 자치단체 행정운영 재원으로 교부함
    - ※ 내국세 일부(19.24%)를 지방자치단체에 일반재원으로 교부
  - » 종류 : 보통교부세(기본적인 행정수준 유지), 특별교부세(예상치 못한 재정수요 대응), 분권교부세(지방이양사업 수행), 부동산교부세(종합부동산세 전액)
- ⊗ 국고보조금
  - » 국가위임사무, 시책사업 등에 대한 사용범위를 정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기 위해 교부함
  - » 기획재정부는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 국고보조율 및 금액을 매년 예산으로 정함 (보조금법시행령상 기준보조율 적용)



- »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Matching) 비율은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의 성격에 따라 매칭지방비가 정해짐

〈 보조금 지급대상 주요사업 매칭 비율 〉

기준보조율	사업성격	주요 사업
100%	국가위임사업	일반여권발급(100%), 가족관계등록사무(100%)
80~70%	국가시책사업	토양개량사업(70%), 상수도시설 확충(70%), 임도시설(70%), 해양 보호구역관리(70%), 국가지정문화재 보수(70%)
50~40%	국가이해 우선사업	산불방지시설 확충(40%), 농산물 유통개선(40%) 소규모 바다농장(50%), 광역클러스터 활성화(50%),
30~15%	지방이해 우선사업	임산물 생산기반 정비(20%)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지원(30%), 체육진흥시설 지원 (30%)

지역발전특별회계

❖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 증진 등 지역경쟁력 제고와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지원하는 예산임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는 2015.1.1.부터 지역발전특별회계로 변경

☞ 지역발전특별회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tf.go.kr) 참조

■ 재정보전금 및 조정교부금 (시·도→시·군·구)

⚙ 재정보전금(시·도 → 시·군)은 광역시·도세를 시·군에 위임하여 징수한 금액의 일부를 시·군의 재정사정 등을 고려하여 배분하는 제도임

⚙ 조정교부금(특·광역시 → 자치구)은 특·광역시에서 관할 자치구의 재원조정을 위해 시세의 일정액을 확보하여 자치구로 배분하는 제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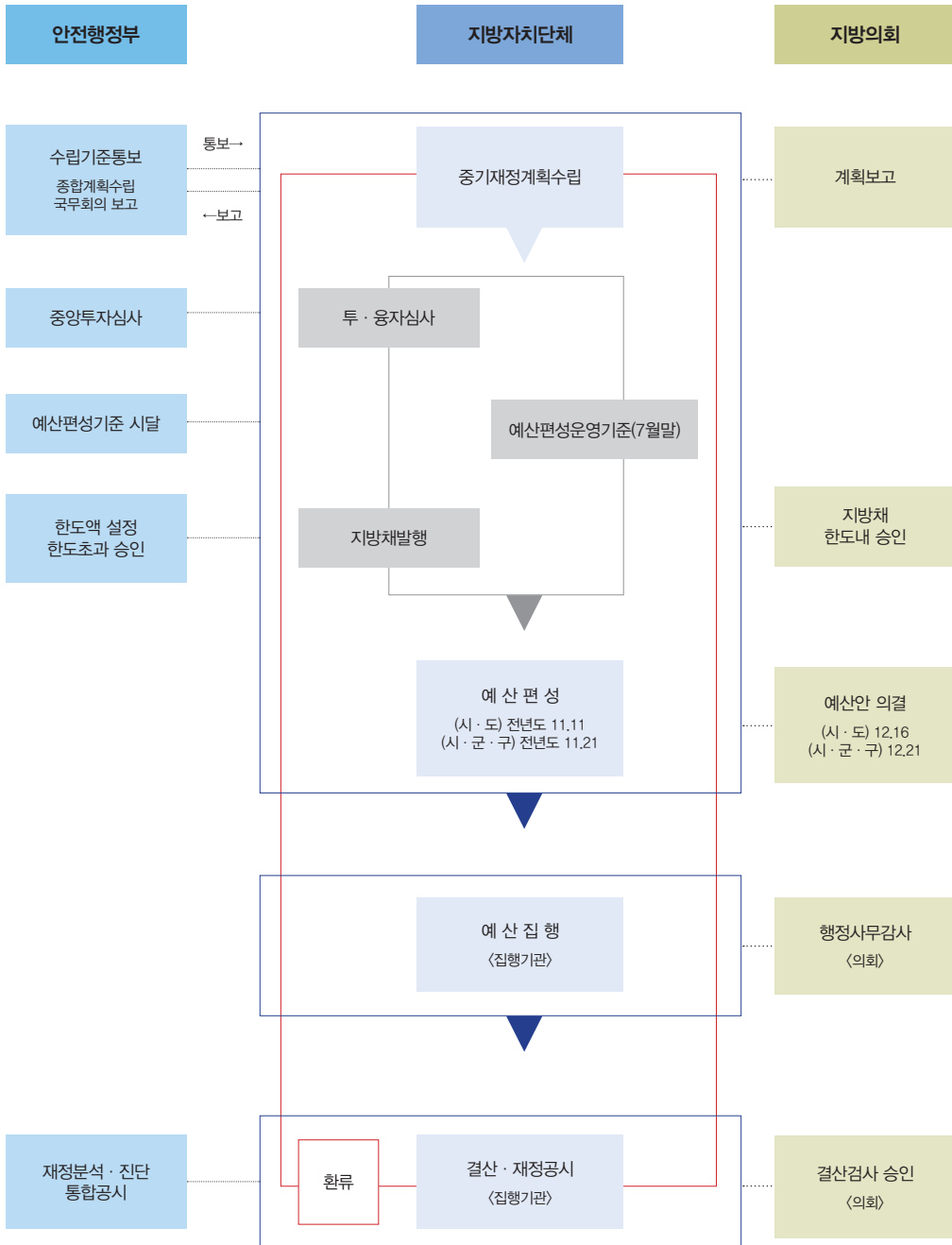
☞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 (재정고 홈페이지(lofin.mopas.go.kr)) 참고

## 참고

## 기초연금제도

- 목적 : 정기적·안정적인 소득기반 제공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 법적근거 : 기초연금법 (제정 : 2014. 5. 20 / 시행 : 2014. 7. 1)
  - (지자체) 각 시·도의 기초연금 비용부담 조례
- 대상자
  - (수급대상)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 중 소득하위 70%
  -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 87만원, 부부 139.2만원) 이하
    - ※ 직역연금(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등)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제외
- 연금액
  - (기초연금액 산정) 국민연금·직역연금 등 수급권이 없는 무연금자는 20만원, 국민연금 수급권자 등은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라 10~20만원
  - (월 급여액 결정)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가구유형(부부2인 수급 시 20% 감액) 및 소득인정액에 따라 감액(최하 월 2만원)
- 예산액 : 7.0조원(2014년), 10.3조원(2015년)
  - 국고보조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 노인인구비율에 따라 40~90% 차등
    - ※ 2014년 평균 국고보조율 76.9%
  - 국비를 제외한 비용은 시·도와 자치구가 상호 부담하며 비율은 조례로 정함
    - ※ 서울특별시의 경우 국비를 제외한 경비 중 시 50%, 자치구 50% 부담

### 03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정



## 04 예산심의 절차

- ⊙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전(시·도는 50일전, 시·군·구는 40일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함
  - » 본회의에서는 예산안을 위원회 회부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먼저 제안 설명을 청취함
  - » 먼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와 계수조정, 소위원회의 전반적인 의견 조정을 거친 후 본회의의 의결로서 예산안을 확정함

### 〈 지방의회 예산안 심의 절차 〉



- ⊙ 지방의회가 법령에 의해 의무적 경비나 필요 경비를 삭감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후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음

## 05 결산 승인

- ⊗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은 지방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성립된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집행실적을 일정한 형식으로 정리한 기록의 표시임
  - » 지방의회가 당초 결정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심사함과 동시에 각종 자료에 근거하여 행정·경제적 효과를 파악함
  - » 예산집행의 적부를 판단하는 동시에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기하는데 있음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원과 공인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들의 사전검사를 거쳐 지방의회에 결산서 등을 제출함

### 〈 결산검사위원 및 결산검사·승인 〉

구 분	결산검사 위원수	결산 검사	결산 승인
시·도	5인 이상 ~ 10인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산검사는 결산검사위원이 주관함</li> <li>• 결산검사 종료 후 10일 이내 감사의견서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산 승인은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li> <li>•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li> <li>• 제1차 정례회의 회기내 지방의회의 승인</li> </ul>
시·군·구	3인 이상 ~ 5인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산 승인은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li> <li>•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li> <li>• 제1차 정례회의 회기내 지방의회의 승인</li> </ul>

- ⊗ 지방의회는 상정된 결산안에 대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후 본회의 의결로 결산승인을 함
  - » 지방의회의 결산안 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 회기내에서 처리함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안전 행정부장관에게 시·군·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함

## 06 예산·결산 관련 지방의회의원의 역할

### 《예산안 심의》

- ④ 예산 내용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지에 따라 세출내역이 다르게 편성되므로 예산안 심사를 위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사업)을 파악해야 함
- ④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정책(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었는지, 투자 심사를 위한 지방재정투융자심사 결과를 반영하였는지 등을 중장기 관점에서 검토해야 함
- ④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가 중요하므로 지방의회도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관심을 가져야 함
- ④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서의 구성 및 예산안의 각종 분류 및 편성체계를 이해해야 함
  - »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중 국고보조금 및 시·도 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 등은 지출용도가 정해져 있음
  - » 인력운영비, 특별회계·기금에 대한 법정지출, 교육재정지원 경비,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각종 지원금 등 법적의무경비는 지방의회의원이 삭감·조정 등이 어려움
- ④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예산안을 삭감할 수는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는 없음

#### 법령 및 조례로 정한 범위를 벗어나 재의결된 예산안의 사례

- ❖ (조례명) ○○광역시 예산안재의결무효확인
- ❖ (판결요지) 의회인턴을 임용하여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내용의 ‘상임위 지원 청년인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부분은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도록 한 지방재정법을 위반하여 효력이 없음(2012추60)

## 세입예산 / 세출예산 심의 시 주요 착안사항

## 〈 세입예산안 심의 〉

- ❖ 세입 예산안 심사 시 세입액수의 추계가 적정한 지 검토
- ❖ 지방자치단체의 사용료/수수료 등 행정원가를 파악하여 현실화 여부 검토
-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에 따라 표준세율, 탄력세율 활용을 검토

## 〈 세출예산안 심의 〉

- ❖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가 중요하므로 의회도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관심
- ❖ 불요불급한 세출예산 여부와 민간 보조금의 교부 타당성 등
- ❖ 중기인력운용계획을 점검하여 인건비나 물건비 등 내부관리경비 절감
- ❖ 재정운영에 있어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여 재정구조상 탄력성을 확보
- ❖ 국고보조사업(시·도보조사업)의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 부담비율 반영 여부
- ❖ 예측치 못한 재정수요(재난·재해 등)에 대한 재원의 적정성 여부
- ❖ 지방의회의 건의 및 지적사항 반영 여부

## 《결산 심사》

- ⚙️ 결산 감사의 목적은 행정집행을 감시하고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정리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한 것임
  - » 결산결과를 가지고 행정실적을 평가하고 행정사무감사 시 행정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이 요구됨
- ⚙️ 결산 심사시 일반적인 회계감사는 결산감사위원의 주된 역할이므로 지방의회 의원은 행정집행 효과를 평가하는 정책평가에 관심을 두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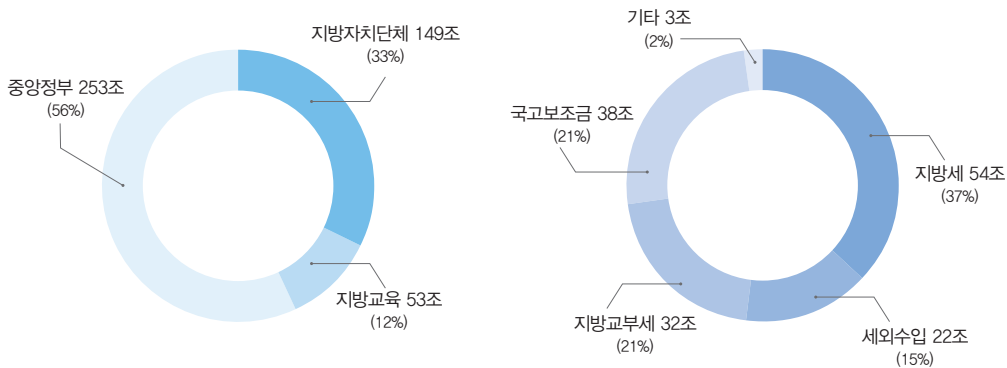
## 결산 심사 시 주요 착안사항

- ❖ 예산의 전체적 집행상황과 주요 사업별 사업효과 여부
- ❖ 예산절감 노력을 얼마나 추진되었는지?
- ❖ 부채(지방채, 채무부담, 차입금 등)는 어느 만큼 늘었는지 여부
- ❖ 결산의 결과를 잘 파악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연계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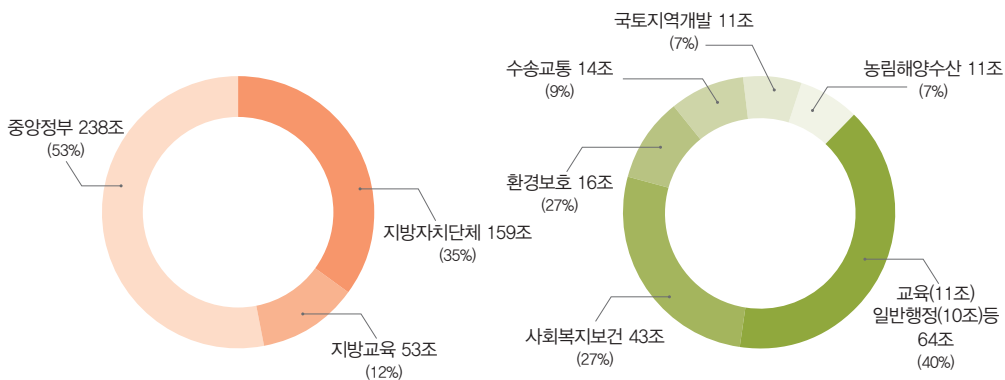
## 참고 지방재정 현황

### '14년 통합재정(예산+기금) 수입: 148.9조원 (기금 1.6조원)



- 지방세 54.5조(37%), 국고보조금 37.7조(25%), 지방교부세 31.6조(21%), 세외수입 21.9조(15%) 등의 순서
- 시·도 97.2조원(65.5%), 시·군·구 51.1조원(34.5%)

### '14년 통합재정(예산+기금) 지출: 158.7조원 (기금 2.5조원)



- 사회복지보건 42.5조원(26.9%), 교육문화 17.5조원(11.0%), 환경보호 15.9조원 (10.0%), 수송교통 13.9조원(8.8%) 등의 순서
- 시·도 54.5조원(34.4%), 시·군·구 104.1조원(65.6%)

※ 통합재정수지는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순세계잉여금 등은 수입에서 제외

## 참고2 지방세 과목구조

### ■ 지방세

○ (세목) 11개 세목으로 구성 \* '11년 세목간소화(16개→11개)

– 도세(6개) vs. 시·군세(5개) / 특·광역시세(9개) vs. 자치구세(2개)



※ 광역시의 경우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은 구세로 세수 귀속

○ (규모) '14년 54.5조원(지방예산 163.6조원의 33%) \*'14년 국세 216.5조원

– 취득세 13.1조(24%), 지방소득세 10.1조(18.5%), 재산세 8.1조(14.9%), 자동차세 6.7조(12.3%), 지방교육세 5.0조(9.2%), 지방소비세 4.2조 (7.6%), 담배소비세 2.8조(5.1%), 기타 4.5조(8.4%) 등

– 유형별 : 시·도세 36.6조(67.1%) vs. 시·군·구세 17.9조(32.9%)

– 세목별 : 취득세 13.1조(24.0%), 지방소득세 10.1조(18.5%), 재산세 8.1조(14.9%) 등



## 04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지방의회의 권한

- ⚙️ **현행 지방자치법에 의한 기관구성은 의회(의결기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집행 기관)을 분리시키고 상호 대등한 위치에 놓음**
  - »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의결하지만 그 집행은 관여하지 못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가 의결한 정책을 집행하지만 그 의결에는 관여하지 못함
- ⚙️ **각각 자주적으로 기능을 수행하면서 상호 견제와 균형(Check & Balance)에 의하여 지방자치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안의 제출(법 §66)</li> <li>•사무의 관리 및 집행(법 §103)</li> <li>•예산안의 편성·제출(법 §127)</li> <li>•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법 §131)</li> <li>•임시회의 요구(법 §45)</li> <li>•부의안건의 공고(법 §46)</li> <li>•위원회 개최 요구(법 §61)</li> <li>•의회사무직원의 임명(법 §91)</li> <li>•조례안의 재의요구(법 §26)</li> <li>•일반의결에 대한 재의요구(법 §107)</li> <li>•예산상 집행불가능한 의결의 재의 요구(법 §108)</li> <li>•재의 지시에 의한 재의요구·제소(법 §172)</li> <li>•선결처분(법 §109)</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결산의 승인(법 §39)</li> <li>•행정사무감사·조사(법 §41)</li> <li>•서류의 제출요구(법 §40, §41④)</li> <li>•의회사무직원의 임명 추천(법 §91)</li> <li>•재의요구된 조례안 재의결·확정(법 §26)</li> <li>•재의요구된 일반의결에 대한 재의결·확정(법 §107)</li> <li>•재의요구된 예산관련 의결의 재의결·확정(법 §108)</li> <li>•재의지시된 의회의결의 재의결·확정(법 §172)</li> <li>•선결처분의 사후 승인권 (법 §109)</li> </ul>

## 01 행정사무 감사

- ⚙️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의 지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올바르게 수행하도록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권한임**
- ⚙️ **매년 1회, 시·도에 있어서는 14일, 시·군·구는 9일 이내에 실시함**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서 선택적 실시)

## 지방의회의 감사 관련 권한

- ❖ 현지 확인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
-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증언
- ❖ 참고인의 의견진술을 요구
- ❖ 사무보조가 필요하면 지방의회사무직원의 보조

-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내의 사무와 법 제41조제3항에 규정된 국가위임사무 중 국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가 감사 대상임
- ⊙ 지방의회 감사 및 조사는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당연 감사기관과 본회의 승인이 필요한 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음
  - » 당연 감사대상 기관으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 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 해당 지방공기업 등이 그 대상임
  - » 본회의 승인이 필요한 기관으로는 교육·학예에 관한 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위임·위탁단체, 지방공사·공단 외의 출자·출연법인 등이 있음

## 02 행정사무 조사

-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본회의가 의결한 특정사안에 관하여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함
  - ※ 기관위임사무는 위임한 기관의 사무이므로 조사대상이 되지 않음
- ⊙ 의회가 지방자치단체 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의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되어야 하며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에 비로소 조사함
  - » 행정조사 발의서에는 조사의 목적·조사할 사안의 범위·조사발의 이유·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이 기재되어야 함

### 〈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의 비교 〉

구분	감사	조사
범위	지방자치단체 사무전반	지방자치단체사무 중 특정사안
시기	(시도) 매년 정례회중 14일 이내 (시군구) 매년 정례회중 9일 이내	수시(기간은 본회의에서 결정함)
발동요건	법정감사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실시
대상사무	자치사무 및 위임사무 * 국회 또는 시도의회 감사사항 제외	자치사무 및 단체위임사무 * 기관위임사무 제외

## 03 선결처분 사후 승인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결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하며, 선결처분에 대한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선결처분은 효력을 상실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결처분

- ❖ 지방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 (의원 구속 등으로 의결정족수에 미달)
- ❖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 중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할 때

참고

## 뉴타운사업(도시재정비촉진사업)

- 목적 : 기존의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해 도시기능의 증진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
  - 기존의 주택재개발 등 개별 정비사업은 소규모 단위의 민간위주로 시행되어 기성 시가지의 체계적 정비에 한계
  - 재정비촉진사업은 공공의 지원을 통해 적정규모의 생활권역을 대상으로 광역적·체계적으로 시행하는 도시정비사업임
- 법적근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지자체)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등
- 현황 : 전국 61개 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되어 있으며, 지구 내 437개 재정비촉진사업이 추진 중

〈 지역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현황 〉

전국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강원	충남	전남	경북	제주
61	31	10	2	3	2	8	2	1	1	1	0

- 예산액 : 1,250억원(2014년, 국토교통부)
  - ※ '10년(120억원), '11년(500억원), '12년(850억원), '13년(1,800억원)
  - 도로·공원·주차장 등 광역적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국비를 지원(전체 사업비의 10%~50% 범위)
    - ※ 서울특별시의 경우 국비 10%, 지방비 90%로 사업 진행

### 지방의회의 역할

- ❖ 시장·군수·구청장은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함
  - 지방의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서를 통지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함

II. 지방의회의  
역할과 운영

## 03

## 지방의회의 운영

## 01

## 소집

## 01 정례회

- ⊗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함
  - » 정례회 집회일 및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함
  - » 별도의 소집요구가 필요하지 않으며 지방의회의장이 소집함
  - » 1차 정례회가 매년 6~7월, 2차 정례회는 11~12월에 개최함
    - ※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9·10월 중에 개최할 수 있음

## 02 임시회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1/3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장은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함
  - » 임시회의 횟수는 제한이 없으므로 조례로 정하는 연간 총회의 일수 범위 내에서 언제든지 소집 가능
- ⊗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국·과장)이 지방의회 의원 임기 개시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함
  - » 의회사무처(국·과)장이 소집하되 공고시점은 의원 임기가 시작되는 7.1일부터 가능함



### 03 공고

- ⊙ 지방의회의장은 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시회 요구가 있을 경우 집회를 위해 반드시 집회공고를 하여야 함
- ⊙ 임시회 소집은 집회일시·장소, 일자 등을 집회일 3일 전까지 공고함(다만 긴급할 때에는 예외)
  - ※ 정례회는 소집요구가 필요 없으나 집회공고는 하여야 함

## 02 회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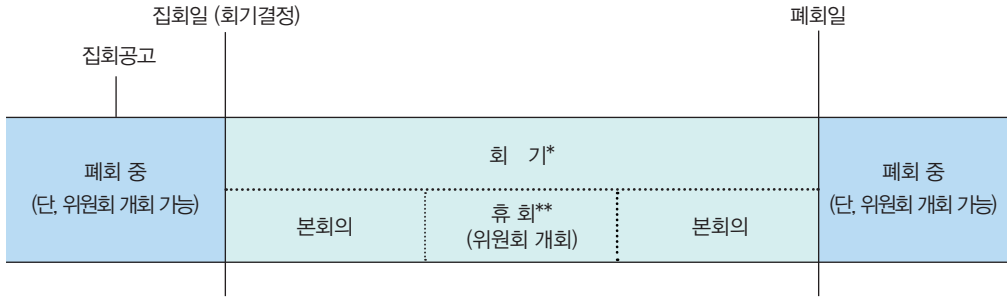
### 01 회기의 결정

- ⊙ 개회·휴회·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함
- ⊙ 회기는 제1차 본회의 개의 후 바로 상정하여 의결함
  - » 회기를 결정하지 못했을 때에도 집회 당일부터 회기는 계속 진행됨
  - » 집회가 된지 며칠 후에 회기를 결정할 때에도 집회한 날부터 계산하여 회기 결정함
- ⊙ 회기는 의결로 연장 가능함

### 02 연간 회의 총일수와 회기

- ⊙ 회의 총일수 및 정례(임시)회 회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함
- ⊙ 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기산하며 휴회기간은 회기에 산입함
  - » 폐회 중 위원회 회의일수는 연간 총 회의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 휴무일인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모두 회기에 포함
- ⊙ 지방의회는 제출된 안건이 한 회기 중에 심사 및 의결하지 못하였다더라도 그 안건은 폐기되지 아니하고 다음 회기에서 처리함

### 〈 지방의회 회기 〉



\* 회기란 매일 본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

\*\* 휴회는 위원회 활동기간의 부여, 의원의 자료 수집 및 기타 활동 등을 위해 일정기간을 정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것을 말함

## 03 회의의 운영

### 01 발의

- ⚙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1/5 이상 또는 의원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함
  - ※ 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 제출 가능
- ⚙ 지방의회에 발의되는 의안\*은 일정한 요건(발의, 형식, 성립)을 갖추어야 유효하게 접수되고 심의·의결하게 됨
  - \* 의안의 유형으로는 「조례안」, 「예산안 및 결산」, 「동의안」, 「건의안」, 「결의안」, 「규칙안」 등으로 분류

### 02 정족수

- ⚙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함(의사정족수)
  - » 회의 중 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함
- ⚙ 특별한 규정 외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의결정족수)
  - »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봄

### 03 표결

- ⊙ 지방의회에서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함
  - » 표결이 끝났을 때에도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
- ⊙ 의장이 표결을 선포할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음

### 04 회의의 공개

- ⊙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함
  - » 의원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2/3 이상이 찬성한 경우 또는 의장이 질서 유지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공개가 가능함

### 05 기타 주요원칙

- ⊙ 지방의회에서 의원의 자유로운 발언을 보장하기 위해서 의원은 다른 의원의 발언을 방해할 수 없음(발언자유원칙)
- ⊙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함(회의공개원칙)
- ⊙ 지방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 되지 못한 것 때문에 폐기되지 아니함(회기계속원칙)
  - » 다만, 의원 임기가 끝나는 경우 미결된 안건은 모두 폐기됨
- ⊙ 지방의회에서 하나의 의사(부결된 의안 등)가 일단 결정되면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음

#### 일사부재의 원칙 적용범위

- ❖ **동일한 회기** : 회기가 다르면 일사부재의 원칙을 적용하지 못함
- ❖ **동일내용 안건** : 같은 회기, 동일 명칭이라도 내용이 상이하면 일사부재의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함
- ❖ **동일한 회의체** : 본회의와 위원회는 각각 독립적으로 적용함

☞ 지방의회 회의에 대한 세부사항은 <부록 : 지방의회 회의규칙 표준안> 참조

- ⊙ 지방의회는 일정한 수 이상의 의원이 참석해야 회의를 시작하고 안건을 의결 할 수 있음(정족수원칙)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지방의회의원



# 의정활동 가이드

지방의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기본사항 안내서

# III

## 지방의회의원의 권한과 의무



1. 지위 및 신분변동
2. 지방의회의원의 권한
3. 의무

### III. 지방의회의원의 권한과 의무

## 01

# 지위 및 신분변동

## 01

### 지방공무원

- ⊗ 지방의회의원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지위를 가짐

\*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시·도교육감

»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임기, 지급경비, 의무 등은 지방자치법령에 따름

## 02

### 지방의회의원의 신분변동

#### 01 의원 사직

- ⊗ 지방의회는 그 의결로 소속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음
  - » 의원이 사직하려면 본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은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함
    - ※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
  - » 지방의회의원이 공직에 입후보하기 위해 사직한다면, 사직서가 의장에게 접수된 때 사직허가가 있는 것으로 간주됨(공선법 제53조)

#### 02 의원 퇴직

- ⊗ 지방의회의원은 ① 겸직할 수 없는 직(법 제35조①항)에 취임한 때, ② 피선거권을 상실(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 포함)한 때, ③ 징계에 따라 제명될 때 퇴직함(법 제78조)

- ⊗ 지방의회의원이 퇴직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본회의 의결 등 별도의 절차 없이 의원직에서 당연 퇴직함

### 03 의원의 자격심사

- ⊗ 지방의회의 의원은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재적의원 1/4 이상의 연서로 의장에게 청구함
  - » 피심의 의원은 자격심사에 관한 회의에 출석하여 변명은 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참가할 수 없음
- ⊗ 자격심사의 의결과정에서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피심의 의원은 의원의 자격을 상실함

### 04 의원 징계

- ⊗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자치법 또는 자치법규에 위반된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의결로써 해당 의원을 징계할 수 있음
  - ※ 징계의 종류는 공개회의에서 경고·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 ⊗ 의장은 징계대상 의원이 있고 징계요구가 있으면 윤리특별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함

구분	대 상	비 고
품위유지 등 의무위반	• 공공이익을 위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위반	법 제36조
	• 청렴·품위유지 위반	
	• 공공단체 등과 계약 등으로 이익·지위 취득 행위, 타인의 취득 알선 행위	
	• 타인모독 및 사생활 관련 발언	법 제83조
회의질서유지 의무위반	• 회의장의 질서문란 언동, 의장(위원장)의 조치에 불응하는 행위	법 제82조
	• 폭력행사, 타인 발언방해, 허가 없이 연단·단상에 등단하는 행위	법 제84조
	• 지방자치법 또는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질서를 어지럽히는 언행, 제척·회피 위반 등	지방자치법 회의규칙
비밀준수 의무위반	• 비공개회의의 내용 및 회의록을 타인에게 열람·복사·전제하게 한 행위 등	회의규칙 53조

구분	대 상	비 고
회의출석 의무위반	• 정당한 이유없이 2일 이상 결석했을 때 의장(위원장)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회의규칙 7조
조례·규칙 위배	• 조례·규칙에 위반하는 행위	법 제86조

## 03 겸직금지

⊗ 지방의회의원이 국회의원, 공무원 등 지방자치법 제35조①항에 나열된 아래의 직위를 겸직하는 경우 당연퇴직 사유가 됨

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 의원
2.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 임직원은 상근 임직원 뿐 만 아니라 비상근 임직원도 포함
5.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6.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영업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과 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 임직원은 상근 임직원 뿐 만 아니라 비상근 임직원도 포함
7.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8.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9.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의원에 당선되면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됨

⊗ 지방의회의원이 공동단체의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동 의무를 위반할 경우 지방의회의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



## 지방의회의원의 권한

### 01 권한

#### 01 의안 발의

- ⊙ 지방의회의원이 의회에서 의결대상이 되는 의안을 발의할 수 있는 권한
  - » 단, 업무의 성질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예산안 및 결산, 동의안, 승인안과 같은 의안은 발의 할 수 없음
- ⊙ 일반 의안의 발의는 재적의원 1/5 이상 또는 10인 이상 연서로 함

#### 02 동의 발의

- ⊙ 동의란 합의체 구성원이 회의 중에 토의할 안건을 제안하는 일 또는 그 제안을 말함
- ⊙ 동의는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구두동의를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됨
  - » 수정동의란 의안을 수정하기 위해 일정한 안을 갖추어 발의하는 것으로 의안의 발의와 유사함
  - » 번안동이는 먼저 가결한 의안을 반복하여 그 의결을 무효로 하여 다시 심의하는 것을 말하며, 다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안건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을 할 수 없음

#### 03 의회에서 발언

- ⊙ 지방의회의원은 의회에서 질문·토론·의안 제안사유 등 의사의 운영 및 안건 등에 대하여 발언 권한을 가짐

- ⊗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위원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
- ⊗ 의장은 의제에 직접관계가 있거나 긴급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 그 외에는 의장이 그 허가시기를 정함

#### 지방의회의원 발언의 면책특권 부여 여부

- ❖ 헌법(제45조)에서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 국회의원에 대해 국회에서 발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
- ❖ 지방의회의원의 발언에 대해 면책특권을 부여할 수 있는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04 표결

- ⊗ 표결은 지방의회의원에게 중요하고 기본적인 권한으로 심의하는 안건에 대하여 찬성·반대 또는 기권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권한임
  - » 표결할 때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이익유무, 기립 또는 거수 등의 방법으로 가부를 결정함
  - »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함
- ⊗ 의장도 본회의의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봄

## 05 의회에서의 선거 및 피선거

- ⊗ 지방의회의원의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 위원장, 임시의장 등을 선출하는 내부적 선거권을 가지며 동시에 이러한 직에 선출될 수 있는 피선거권을 가짐
  - » 시·도의 경우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무기명 투표로 선거함
  - » 의장과 부의장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함

## 06 청원소개

- ☉ 헌법상 권리인 청원권은 주민이 지방의회에 청원할 때 의원 1인 이상 소개를 얻어 제출하며 이때 지방의회의원은 청원의 소개의원이 됨

## 07 의회와 의장에 대한 특정행위 요구권

- ☉ 지방의회의원은 의회 또는 의장에게 어떤 행위를 구하는 요구권을 가짐

1. 임시회 소집요구권(법 제45조②항)
2. 의원의 자격심사 요구권(법 제79조①항)
3. 의원의 징계요구권(법 제83조②항)
4. 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요구권(법 제41조,42조)
5. 본회의 재개요구권(회의규칙 제16조②항)
6. 서류제출요구권(법 제40조)
7. 서면질문요구권(회의규칙 제74조①항)

# 02 입법 등 지원

## 01 전문위원

- ☉ 지방의회의 사무기구는 조례에 따라 설치되며 지방의회의원의 정책을 보좌하기 위한 조직으로는 위원회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전문위원이 있음
  - » 직급과 정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의회별 의원정수기준에 의하여 책정토록 하고 있음
- ☉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의안심사와 의사진행을 보좌함
  - » 전문위원은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소관사항과 관련한 검토,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등의 기능 수행함
  - » 그 밖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사무처(국·과)장의 지휘·감독을 받음

## 02 사무기구의 정책부서

- ⊗ 지방의회 사무기구는 조례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치되므로 지역별 실정에 따라 입법 및 예산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일부 시·도의회는 입법·예산정책담당관실을 두고 있음
  - ※ 제주도의회는 도의회가 시군의회 기능을 포괄 수행함에 따라 전문위원 외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자문위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03 의정활동비 등 지원

- ⊗ 지방의회의원은 의정활동의 지원을 위해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을 지급 받음(지방자치법 제33조)
  - »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조례로 정함

### 01 의정활동비

- ⊗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기준에 따라 지급됨

〈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자치법시행령 제33조 관련) 〉

구분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시·도의회 의원	월 1,200,000원 이내	월 300,000원 이내
시·군·자치구의회 의원	월 900,000원 이내	월 200,000원 이내

### 02 여비(국내·국외)

- ⊗ 지방의회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기준에 따라 여비가 지급됨

〈 지방의회의원 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자치법시행령 제33조 관련) 〉

(단위 : 원)

구분	지급기준액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현지 교통비 (1일당)	숙박비 (1일당)	식비 (1일당)
시·도의회 의원	1등급	2등 정액	정액	정액	20,000	46,000	25,000
시·군·자치구의회 의원	1등급	2등 정액	정액	정액	20,000	46,000	25,000

⊙ 지방의회의원이 공무상 국외출장 필요한 경우 여비를 연간 예산편성 범위 안에서 집행할 수 있음

» 연간 예산금액은 정원비례로 산출하나 편성된 총액 범위 내에서 적절히 배분\* 하여 사용 가능함

\* 1인당 편성액은 의원 1인당 집행 가능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지급범위(자치법시행령 제33조 관련) 〉

(단위 : 달러)

구분	지급 기준액				준비금			
	항공임	일비	숙박비	식비	15일 미만	15일 이상 30일 미만	30일 이상	
시·도	의장·부의장	1등 정액	40	205	133	150	180	210
	의원	1등 정액	35	166	107	140	170	195
시·군 자치구	의장·부의장	1등 정액	35	166	107	140	170	195
	의원	2등 정액	30	145	81	130	155	180

### 03 월정수당

⊙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결정하여 다음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4년 동안 적용됨

⊙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로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교육계 및 통·리장 등 지방의회의장이 추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되는 의정비심위원회(10인)에서 결정함

⊙ 지방공무원 보수인상을 범위에서 인상시 주민의견수렴 절차 생략 가능함

## 04 지방의회의원 상해·사망 보상제도

- ⚙️ 회기중 직무로 인해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할 때 지급함

### 시행령상 지급기준(영 제35조①항)

- ❖ 사망시 : 시·도의원 의정활동비 2년분 상당액
- ❖ 장애시 : 시·도의원 의정활동비 1년분 상당액
- ❖ 상해시 : 치료비 전액, 다만 직무상 장애 보상금을 초과할 수 없음

## 05 맞춤형 복지 및 단체보험 보상금

- ⚙️ 지방의회의원 등 정무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일반 지방공무원과 같이 맞춤형 복지 및 단체보험 보상제도가 적용됨
  - ※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동일한 보험 혜택 수혜

## 의무

### 01 준수해야 할 의무

- ⊗ 공공이익 우선의 의무
  - » 지방의회의원이 주민 전체의 대표자로서 법과 양심에 따라 주민 전체의 이익이 되도록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 ⊗ 청렴 의무
  - » 지방의회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향응을 받을 수 없음
- ⊗ 품위유지 의무
  - » 지방의회의원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공사생활에 있어 모범을 보여 의원의 지위에 상응하는 행동을 하여야 함
- ⊗ 지위남용금지의 의무
  - »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을 하거나 타인을 위한 알선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 ⊗ 기타 의무
  - » 회의의 질서유지, 모욕 등 발언의 금지, 발언방해 등의 금지, 본회의나 소속 위원회의 출석, 법령 및 규칙의 준수 등의 의무가 있음

## 02 겸직신고

- ⊗ 신고의 대상이 되는 직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에 의해 겸직이 금지된 직을 제외한 모든 직을 말하는 것임
  - » 영리 및 비영리 여부, 기관·단체 등의 대표자·종사자 및 자영업자 여부를 불문함 (다만, 친목회장 등 자생적인 직은 제외)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한 농업인,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업인 등도 포함됨
- ⊗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은 조례에 정해진 바에 따라 실시하며, 겸직내용을 적시하여 의원이 서명날인 후 신고함
  - » 겸직한 직에서 퇴직하거나 직위의 변경 등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변경신고 해야 함
- ⊗ 의장은 겸직신고의 내용을 검토한 후 청렴과 품위유지 규정 등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함

## 03 재산등록 및 주식백지신탁

### 01 재산등록

- ⊗ 지방의회의원이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 최초 재산등록을 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하는 것을 말함
- ⊗ 지방의회의원의 등록재산은 공개하고 있음(공직자윤리법 제3,6조)
  - ※ 정무직, 4급이상 공무원(특정분야 7급), 법관,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



## 02 주식백지신탁

- ⊗ 대 상 자 : 지방의회의원 당선자(공직자윤리법 제10조①항의2)
- ⊗ 대상주식
  - » 본인 및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주식이 해당됨
  - \* 이해관계자 : 배우자(사실혼의 배우자 포함), 본인의 직계존비속
- ⊗ 신고기준일
  - » 3천만 원을 초과한 날(기존 주식이 상승으로 3천만 원 초과한 날 포함)
  - » 공개대상자 등이 된 날
  - » 변동사항 신고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
  - »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 직무관련성 있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
  - » 백지신탁계약 체결 후,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주식을 신규 취득한 날
  - » 공개대상자 등의 직무(상임위원회, 보직 등)가 변경된 날
    - ※ 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매각·백지신탁 또는 직무관련성 심사청구를 해야 함
    - ☞ 재산등록 및 주식백지신탁의 추가 내용은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www.peti.go.kr) 참조

## 04 행동강령 준수

- ⊗ 당초 지방의회의원도 「공무원 행동강령」의 적용을 받았으나, 선출직 공무원의 신분적 특성 등을 감안한 별도 행동강령이 적용됨
  -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11. 2. 3. 대통령령으로 시행
  - »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외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회피
  - » 타 기관·단체에서 여비 등을 지원받는 국내외 활동 제한
  - » 행동강령 위반 의원은 자문위원회를 거쳐 징계
  - » 그 외 직무 관련 영리행위 신고, 성희롱 금지 등 15개 행위기준을 제시
    -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구체적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참조

## 05 의무위반의 효과

- ⚙ 지방의회의원의 의무위반은 징계사유에 해당됨
- ⚙ 본회이나 위원회에서 모욕을 당한 의원은 모욕을 한 의원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음
- ⚙ 지방의회의원에게는 국회의원과 달리 면책특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각종 의무위반, 모욕 등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지 않음



IV. 지방의회와  
주변 환경

## 01

## 지역주민

## 01 주민의 의의

## 01 주민의 지위

-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한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됨
  - » 시·군·구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도 주민에 포함되나, 권리·의무는 법령에 따라 제한됨
- ⊗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 및 지방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짐
  - \*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원선거에 대한 선거권 및 후보 출마 등
- ⊗ 주민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세 납부 등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하는 의무를 짐

## 02 주민참여

- ⊗ 대의제의 제 기능의 보완과 민주주의의 유지·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 » 주민이 필요한 제도를 직접 수립(조례 제정·개폐 청구)하거나,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책임성과 통제를 강화(주민소환)함
- ⊗ 「지방자치법」에 주민조례 제정·개폐청구,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 주민투표, 주민소환, 「지방재정법」에 주민참여예산 등을 규정함
- ⊗ 행정서비스 개선 및 자의적 행정 방지의 기능을 함

- » 주민들의 의사를 행정에 반영하고, 주민들의 수요·요구에 대응하여 행정서비스를 개선하여 주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확보함
- »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사항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여 자의적 행정을 방지(주민투표) 하고, 위법사항 시정 요청(주민감사, 주민소송)함
- ⊙ 지방의회의원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지위를 가짐
- \*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시·도교육감
- »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임기, 지급경비, 의무 등은 지방자치법령에 따름

## 02 주민참여 제도

### 01 주민조례 제정·개폐청구(지방자치법 제15조)

- ⊙ 조례에서 정하는 일정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 제정이나 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음
- ⊙ 법령 위반사항, 지방세·사용료 등의 부과·징수·감면 사항, 행정기구 설치·변경 또는 공공시설 설치 반대사항은 청구 제외됨

연서 주민수 최소 청구요건

\* 아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함

- ❖ (시·도·50만 이상 대도시) 19세 이상 주민총수 1/100이상 1/70 이하
- ❖ (시·군·자치구)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50이상 1/20 이하

### 02 주민감사 청구(지방자치법 제16조)

- ⊙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될 경우 청구하고 있음
- ⊙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 끝난 날부터 2년 경과시 제기 불가함

## 청구인원 및 기관

- ❖ 시·도 500명 / 50만 이상 대도시 300명 / 그밖의 시·군·자치구 200명 범위내 조례로 정함
- ❖ 시·도 → 주무부장관, 시·군·자치구 → 시·도지사에게 청구

## 주민감사 청구 사례

- ❖ 경기 용인시 경전철 사업에 대하여 주민(392명) 서명을 통해 감사 청구('13.4.1), 경기도에서 감사 실시(6.5~7.22)하여 기관경고 1건, 개인주의 3건 등 행정상 처분

## 03 주민소송

- ⊗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에 대해 지역주민이 자기의 권리·이익에 관계없이 그 시정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
  - ※ 주민소송 성립 전 감사청구 전치주의를 채택
- ⊗ 당해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 취소 또는 무효 등 확인, 부작위위법 확인 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있음

## 주민소송 대상

- ❖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 ❖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사항
- ❖ 지방세·사용료·수수료 등 공금의 부과·징수의 해태에 관한 사항

## 주민소송 제기 사례

- ❖ 경기 용인시의 경전철 사업에 대하여 감사가 종료된 후, 시민단체와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소송단(12명)이 용인시장 등을 상대로 “잘못된 수요예측과 절차위반으로 세금낭비를 초래”했다는 사유로 주민소송 제기('13.10.10, 1심 계류중)

## 04 주민투표 (지방자치법 제14조, 주민투표법)

- ⊙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해 투표를 통해 주민이 직접 결정함
  - ※ 국가정책(지방자치단체의 폐지·분합·구역변경, 주요시설의 설치 등) 대해 주민의견 수렴 필요시 중앙행정기관장 요구에 의해 해당 지자체장이 실시
- ⊙ 찬성·반대 또는 2가지 안 중 택일하는 형식으로 1/3이상 투표와 유효투표 과반수 득표로 투표결과를 확정함
  - ※ 확정 내용에 따른 행·재정상 조치 및 2년 내 확정 내용 변경 불가

### 주체별 청구요건

- ❖ 주민 : 투표권자 1/20~1/5 이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
- ❖ 지방의회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 찬성
- ❖ 지방자치단체의 장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직권 실시

### 주민투표 사례

- ❖ 서울시 무상급식 지원범위와 관련, 「복지포폴리즘 추방 국민운동본부」에서 주민투표를 청구('11.6.16)하여 서울시장은 주민투표를 발의('11.8.1)
- ❖ ① 소득 하위 50% 학생 대상 단계적 실시와 ②모든 학생 대상 전면 실시 중 선택하도록 했으나, 투표율 25.7%의 개표요건(1/3 이상) 미흡으로 미개표

## 05 주민소환 (지방자치법 제20조,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 ⊙ 선출직 지방 공직자에 대해 소환투표를 실시, 그 결과에 따라 임기종료 전에 해직시킬 수 있음 \* 청구사유 제한 없음
- ⊙ 주민소환투표 발의일부터 투표결과 공표시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1/3이상 투표와 유효투표 과반수 득표로 소환이 결정됨

### 대상별 청구요건

- ❖ 시·도지사 : 청구권자 10/100 이상의 서명(지역 균형 요건 추가)
- ❖ 시장·군수·구청장 : 청구권자 15/100 이상의 서명(지역 균형 요건 추가)
- ❖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제외) : 청구권자 20/100 이상의 서명(지역 균형 요건 추가)

### 주민소환 사례

- ❖ 경기도 하남시의 “화장장 건립 추진과 관련된 갈등”으로 하남시장 및 시의원 3명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 실시('07.12.12)
- ❖ 하남시장과 시의원 1명은 투표율 1/3 미달로 미개표하였고, 하남시의원 2명은 각각 투표율 37.6%, 찬성을 85.8%·93.6%로 소환

### < 주민직접참여 제도 >

구분	주민조례 제정·개폐청구	주민감사 청구	주민소송	주민투표	주민소환
청구 대상	- ※ 법령위반, 지방세 부과, 행정기구· 공공시설 설치 등 제외	지자체 및 장의 권한사 무가 법령 위반, 공익 을 저해할 경우	주민감사 청구 후·위 법한 재무회계 행위에 대해 자치단체장을 대상	지방자치단체 주요 결정사항 ※ 국가사무 등 제외	선출직 지방공직자 ※비례대표 제외
청 구 자	19세이상주민 (조례로 규정) ※ (시·도·50만이상 대도시)1/100~1/70 (시·군·자치구) 1/50~1/2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주민수 이상의 연서	19세이상 주민 ※ 시도 500명, 시군구 200명미만 연서	감사청구를 경유한 주민이 90일내 행정 법원에 소송제기요건 인 경우에 한해 주민 소송 제기(이 경우 1인 소송 가능) ·청구수리후 60일내 감사 미종결 ·감사결과 조치 요구 미이행 또는 이행 조치 불복	·19세이상주민 (조례로 규정) ·의회, 단체장 ※ 주민청구시 청구권 자 총수의1/20 ~ 1/5 범위내 서명	19세이상 주민 ※ 시도지사(10/100), 시·군수(15/100), 지 방 의 회 의 원 (20/100) 이상서명
제한 사항	선거기간중 서명요청 금지(공선법§33)	사무처리일부터 2년 경과시 제기 불가		선거일전 60일~선거일까지 서명불가 ※주민투표일 지정불가 ※소환사유 제한없음	
심 사 등	지자체장 (조례규칙심의회)	상급기관 (감사청구심의회)		지자체장	관할선관위 ※ 소환 투표대상자소명



## 06 주민참여 예산제도(지방재정법 제39조)

- ④ 지방재정의 민주성·책임성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해 행정수요·우선순위를 반영함
  - ※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간담회, 인터넷·서면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의 방법을 실시하여 의견수렴(시행령 제46조)
  - ※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의견수렴 절차·운영방법 등은 조례로 정함

### 주민참여 예산제도 사례(경기도 수원시)

- ❖ (구성)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60명 이내/ 성별 고려/ 공개모집, 시의회 추천, 비영리 민간단체 추천, 각 구 지역회의 추천 등
- ❖ (운영) 청소년위원회, 시민회의(총회), 예산학교, 찾아가는 예산설명회 운영 및 시의회 주관으로 참여 예산 정착을 위한 연구보고서 제출 등

## 03 주민과의 소통·홍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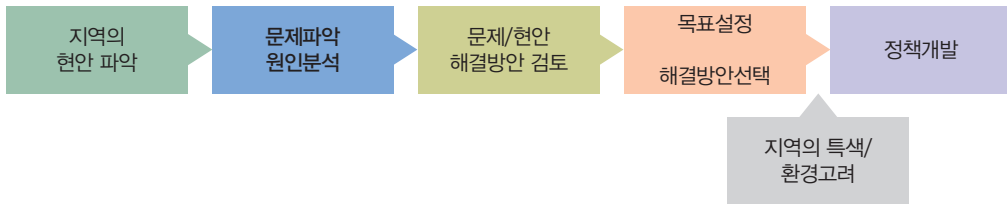
### 01 소통·홍보 방법

- ④ 지방의회의원의 지역주민들과 일반적인 소통·홍보 수단인 의회 홈페이지, 의회보, SNS 등을 활용하여 소통·홍보하는 것이 필요함
  - » 의원 개인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을 의회 홈페이지와 링크해 놓음으로써 자신의 의정활동을 알리고 소통할 수 있음
- ④ 지방의회나 의원들이 정기적으로 주민들에게 의정활동에 대한 보고회(설명회), 공청회(간담회) 등을 개최할 필요가 있음
- ④ 시민단체와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의정활동의 파트너로 구축함
- ④ 청원제도를 숙지하고 청원의 소개를 통하여 주민과 소통할 수 있음
  - ☞ 청원제도에 관한 추가적 설명은 <참고1> 참조

## 02 지역현안의 정책화

- ❊ 지방의회가 지역의 문제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문제인가를 먼저 파악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야 함
- ❊ 현 실태와 원인이 파악되고 나면 해결목표와 대안을 찾아내고 여러 대안 중에서 효과적인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 이 과정이 정책개발 과정임

### 〈 정책개발 과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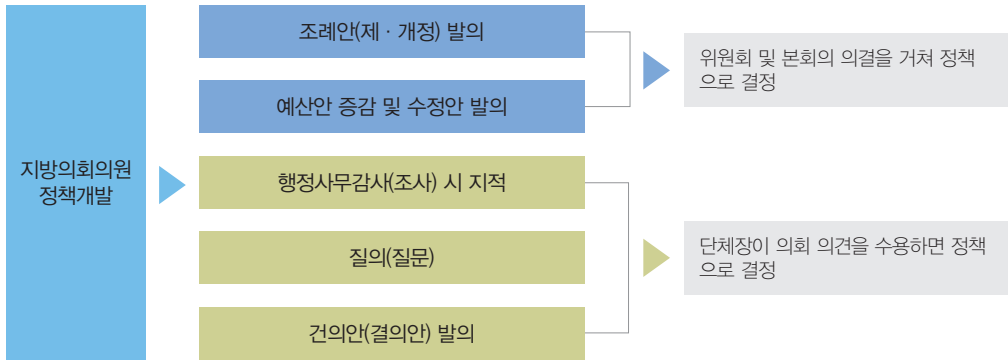
- ❊ 지방의회의원이 원활하게 정책의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입법지원부서, 전문가, 정책개발을 위한 모임 등을 잘 활용해야 함

### 정책개발 시 전문가 도움을 받는 방법

- ❖ 지방의회의원의 정책개발을 위해서는 의회사무처의 전문위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 각 지방의회는 입법 및 법률고문제도를 두고 있으며, 중요한 안건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음
- ❖ 정책 연구단체가 구성된 경우에는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 발굴을 위해 정책연구 용역을 활용할 수도 있음
- ❖ 주요 정책이나 현안에 대한 공청회나 토론회를 개최 시 적극적으로 참석하여 주민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소통도 가능함

- ❊ 정책이 개발되면 정책으로 채택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음
- ❊ 지방의회의원이 개발한 정책은 지방의회에 안건(조례안, 예산안 등)으로 제출되어 의결과정을 거쳐 정책으로 결정됨
-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는 지방의회의원이 행정사무감사(조사), 질의(질문), 건의안(결의안) 등의 방식을 통해 단체장에게 제안하여 정책으로 결정되기도 함

### 〈 정책결정 과정 〉



IV. 지방의회와  
주변 환경

## 02

## 지방자치단체간 협력

## 01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 ❊ 전국시·도의회의장 17명을 회원으로 하며, 임원은 회장 1명, 수석부회장 1명, 부회장 4명, 감사 2명, 사무총장 1명, 정책위원장 1명이며, 임기는 1년으로 연임 가능함
- ❊ 별도의 협의회사무소를 두고, 시·도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협의회 자체에서 채용한 계약직 전문위원 등이 근무하고 있으며, 협의회 운영예산(약 9억원)은 시·도별 분담금으로 편성·총당함

## 02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 ❊ 전국 15개 시·도의 시·군·자치구의장 대표를 회원으로 하며, 임원은 회장 1명, 수석부회장 1명, 부회장 11명, 감사 2명이며, 임기는 2년임
- ❊ 별도의 협의회사무소를 두고, 동 협의회 회장인 시·군·자치구의회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협의회 자체에서 채용한 계약직 전문위원 등이 근무하고 있으며, 협의회 운영예산(약 10억원)은 시·군·자치구별 분담금으로 편성·총당함

### 지방 4대 협의체

- ❖ 시·도지사, 시·도의회 의장, 시장·군수·구청장, 시·군·구의회 의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 의장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력하기 위해 구성하여 운영함
  - ※ 근거 : 지방자치법 제165조 제1항, 제2항
- ❖ 각 협의체는 지방자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관한 의견을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음
  - 안전행정부장관은 협의체 건의사항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협의체 및 연합체에 통보하여야 함
- ❖ 협의체는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 03 지방자치단체간 협력 제도

### 01 사무의 위탁

- ⊙ 업무의 중복 방지 등 예산절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당해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음
  - » 상·하수도 및 쓰레기 처리 등 환경시설에 대하여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이용이 가능한 분야임
  - » 환경보전, 수질개선 등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공조가 필요한 분야
  - »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사용을 위한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분야 등
    - ※ 근거 :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1항
- ⊙ 지방자치단체간 사무위탁 관련 사항을 협의(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경비의 부담 방법 등)한 후 협의에 의해 규약을 제정하고,
  - »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고시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함
    - ※ '95년 이후로 총 53개 사업에 대해 사무위탁 추진('13년 신규 2건)

## 02 행정협의회

- ⊗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특정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협의기구임
  - » 광역계획 및 그 집행, 공공시설의 공동설치, 행정정보의 교환, 행·재정업무의 조정 분야 등
    - ※ 근거 :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1항
- ⊗ 특정 사무의 공동처리를 위해 관계 지방자치단체간 협의(처리사무, 경비의 부담 방법, 기타 협의회 운영 사항 등 포함)후 규약을 제정함
  - » 지방의회에서 협의회 구성과 규약관련 사항을 의결,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고시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함
    - ※ '13년말 현재 87개 행정협의회가 구성 운영(권역별 43개, 기능별 44개)

## 03 지방자치단체조합

- ⊗ 법인으로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구성원이 되어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립함
  - ※ 지방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처리하는 점에서 행정협의회와 동일하지만, 행정협의회는 법인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음
  - ※ 근거 : 지방자치법 제159조 내지 제164조
- ⊗ 조합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필요성, 추진방법 등)하여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간 조합결성 협의 및 규약을 제정함
  - » 지방의회에서 조합구성과 규약관련 사항을 의결 후 조합규약(안)·지방의회 의결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안전행정부에 신청하여 설립함
    - ※ '13년말 현재 7개 조합이 구성 운영

## 04 지방자치단체간 분쟁 조정

- ⊗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 간 분쟁이 생기면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안전행정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 ⊗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 발생시 중앙(안행부) 및 시·도 분쟁조정위에서 조정함

-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 간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이 달라 분쟁이 생기는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분쟁을 조정함(중앙분쟁조정위원회)
- » 동일 시·도내의 기초 지방자치단체(장) 상호 간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이 달라 분쟁이 생기는 경우 시·도지사가 그 분쟁을 조정함(지방분쟁조정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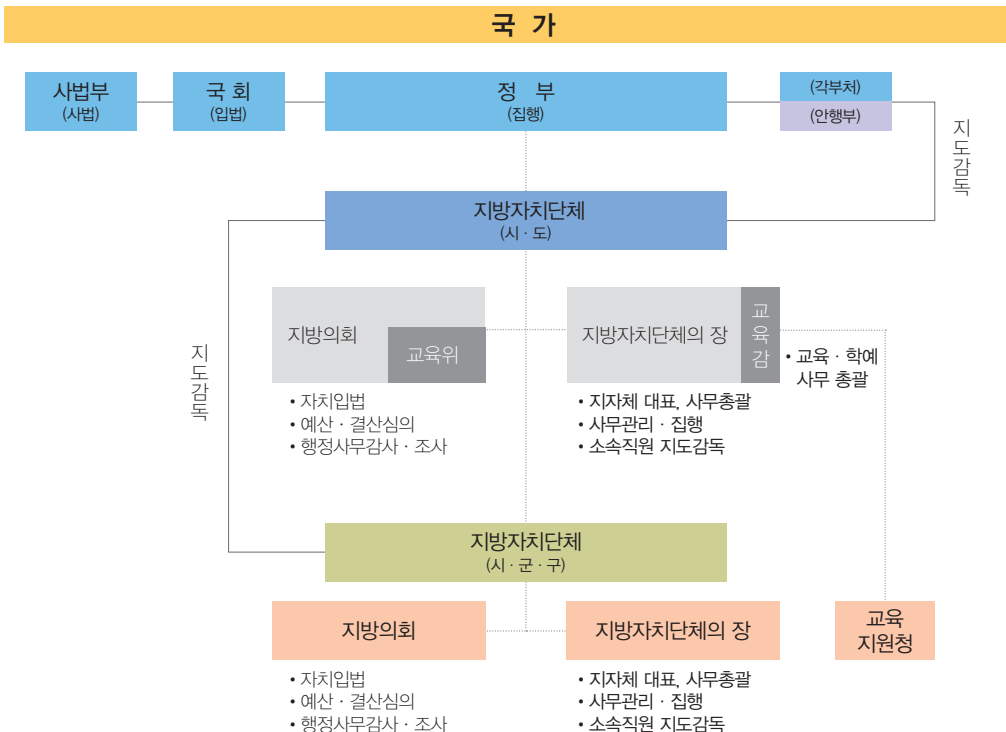
IV. 지방의회와  
주변 환경

03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

## 01 일반적 관계

- ⚙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생각될 수 없고 전체 국가를 이루는 한 구성 부분으로 파악해야 함
  - » 국가는 법 제정을 통해 지방자치제도를 구체화하고, 감독활동을 하며, 지방자치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국가로부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필요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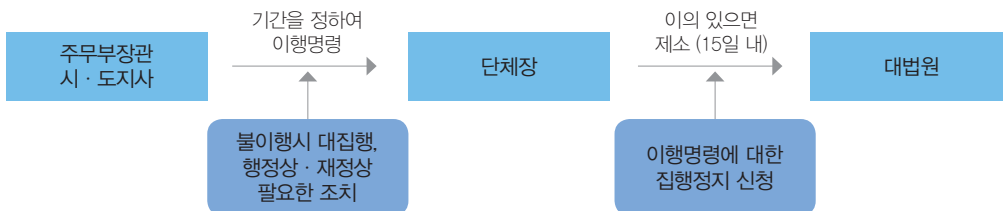
☞ 중앙 정부 조직 및 각 부처 주요기능은 <참고2> 참조



## 02 국가의 지도·감독

- ⊙ 중앙정부는 법령 제·개정 및 지도·감독을 통해 관여함
  - » 각종 법령 제·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근거, 한계, 업무 수행 절차 등을 설정함
  - »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함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대해 시·도는 주무부장관, 시·군·구는 시·도지사(1차), 주무부장관(2차)의 지도·감독·감사를 받음
  - »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법령 위반사항에 한정하여 시·도는 안전행정부장관, 시·군·구는 안전행정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감사함
- ⊙ 위법·부당한 명령·처분의 시정, 위임사무 해태에 대한 직무이행명령을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각각 할 수 있음

###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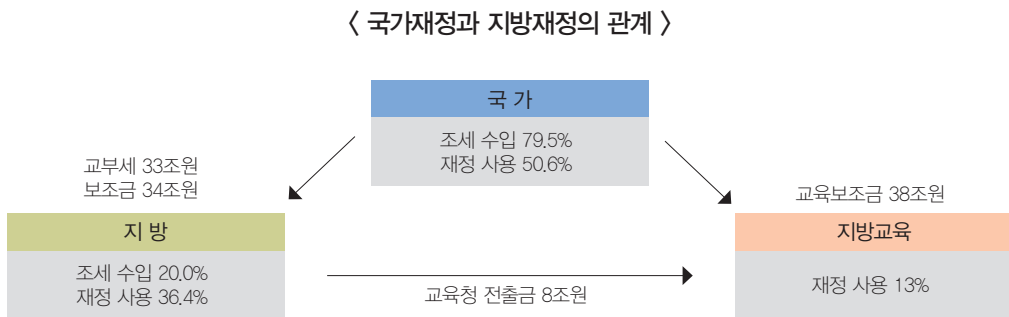


- ⊙ 위법한 지방의회 의결에 대해 상급기관은 재의·제소 지시 가능함
  - » 지방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치면 시·도는 주무부장관, 시·군·구는 시·도지사가 재의요구 가능함
  - »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될 경우 주무부장관·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법원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 가능함

## 03

##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관계

- ⚙ 지방재정과 국가재정의 관계는 중앙과 지방간 사무권한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
  - » 우리나라는 사무권한과 재정권의 수직적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을 중심으로 하는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해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재원을 이전하고 있음
- ⚙ 지방교육재정(시도교육청)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이전수입으로 충당되고 있음
  - » 중앙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육보조금을 시도교육청에 지원
  -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교육세를 비롯하여 담배소비세 및 시도세전출금, 교육경비보조금 등을 시도교육청에 지원함
-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규모를 합산한 2012년 통합재정규모는 수입 384.6조원 지출 364.1조원으로 파악됨
  - » 세입 측면에서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8:2의 구조이며
  - » 세출 측면에서는 중앙재정은 50.6%, 지방재정은 36.4%, 지방교육재정은 13%를 차지하고 있음



주) 2012년 예산·결산 기준

## 청원

### ■ 의의

- 청원이란 주민이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 등에 대하여 불만이나 희망을 개진하고 시정이나 구제를 요구하는 것을 말함
  - ※ 지방의회에 청원하려는 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지방자치법 §73)

### ■ 청원의 처리

- 청원의 제출
  - 청원을 할 수 있는 자는 자연인(주민)과 법인 또는 내·외국인 등임
  - 지방의회의원에 청원을 하려고 하는 자는 문서로 청원서를 제출해야 함
  - 청원을 하려는 경우 의원 1인 이상의 소개가 있어야 함
    - ※ 접수된 청원에 대해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철회 가능함
- 청원의 내용
  - 주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경우 이에 대한 구제를 요구
  - 공무원의 비위의 시정 또는 징계나 처벌의 요구
  -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
    - ※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의 청원은 수리하지 않음
- 청원의 심사 및 처리
  - 지방의회가 채택한 청원은 지방의회에서 신속·공정하게 처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원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함



## ■ 각 부처 주요기능

기관명	소 관 사 무	외 청
기획재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li> <li>• 경제·재정정책의 수립·총괄·조정</li> <li>•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관리</li> <li>• 화폐·외환·국고·정부회계·내국세제·관세·국제금융</li> <li>• 공공기관 관리</li> <li>• 경제협력·국유재산·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li> </ul>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미래창조 과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li> <li>•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협력·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li> <li>•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li> <li>• 국가정보화 기획·정보보호·정보문화, 정보통신산업</li> <li>• 방송·통신의 융합·진흥 및 전파관리</li> <li>• 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li> </ul>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li> </ul>	
외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외교</li> <li>• 국제관계 업무에 관한 조정, 조약 기타 국제협정</li> <li>• 재외국민의 보호·지원, 재외동포정책의 수립</li> <li>• 국제정세의 조사·분석에 관한 사무</li> </ul>	
통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li> <li>• 통일교육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li> </ul>	
법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li> </ul>	검찰청
국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li> </ul>	병무청, 방위사업청
안전행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li> <li>• 비상대비·민방위제도</li> <li>•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연금, 상훈</li> <li>•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및 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li> <li>•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선거, 국민투표</li> <li>•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li> </ul>	경찰청, 소방방재청

기관명	소관사무	외청
문화체육 관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관광</li> <li>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li> </ul>	문화재청
농림수산 식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산·수산·축산, 식량·농지·수리,</li> <li>식품산업진흥, 농어촌개발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무</li> </ul>	농촌진흥청, 산림청
산업통상 자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업·무역·공업·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외국인 투자</li> <li>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에너지·지하자원에 관한 사무</li> </ul>	중소기업청, 특허청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건위생·방역·의정(醫政)·약정(藥政)·생활보호·자활 지원·사회보장·아동(영·유아 보육을 포함한다)·노인 및 장애인에 관한 사무</li> </ul>	
환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무</li> </ul>	기상청
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그 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li> </ul>	
여성가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청소년 및 가족(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li> </ul>	
국토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토종합계획의 수립·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 도시·도로 및 주택의 건설</li> <li>해안·하천·항만 및 간척, 육운·해운·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li> </ul>	
해양수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양정책, 수산, 어촌개발 및 수산물 유통</li> <li>해운·항만,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사무</li> </ul>	해양경찰청

#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 가이드

---

## V

## 부 록



1. 참고자료 및 정보    2. 주요 용어 정리

3. 공직선거법상 지방의회의원의 주요 행위기준    4. 지방의회 회의규칙 표준안

# 01 참고자료 및 정보

## ○ 추가 참고자료

추가정보 명	홈페이지 주소	정보를 찾는 방법	자료명
지방세 구조	재정고 (lofin.mospa.go.kr)	지방세정보 ⇒ 지방세구조	홈페이지 자료
지방재정조정제도	재정고 (lofin.mospa.go.kr)	재정정보공개 ⇒ 지방재정운영 ⇒ 147번 자료	2014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
지역발전특별회계	기획재정부 (www.most.go.kr)	정책 ⇒ 예산·국고 ⇒ 검색	2015년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 방향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국민권익위원회 (www.acrc.go.kr)	청렴연수원 ⇒ 공부방 ⇒공직자행동강령	홈페이지 자료
재산등록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www.peti.go.kr)	공직윤리제도 ⇒ 재산등록 및 심사	홈페이지 자료
주식백지신탁		공직윤리제도 ⇒ 주식백지 신탁제도	홈페이지 자료
선물신고		공직윤리제도 ⇒ 선물신고	홈페이지 자료

## ○ 관계기관 정보

기관 명	홈페이지 주소	대표 전화	비고
안전행정부	www.mospa.go.kr	02-2100-3399	
지방행정연수원	www.logodi.go.kr	063-907-5100	
국회의정연수원	training.na.go.kr	02-788-3983	
지방공기업평가원	www.erc.re.kr	02-730-6746	
지역발전위원회	www.region.go.kr	02-2100-1168	
지방자치발전위원회	www.clad.go.kr	02-2100-2216	
한국지방세연구원	www.kilf.re.kr	02-2071-2725	
한국지방행정연구원	www.krila.re.kr	02-3488-7300	
전국시도지사협의회	www.gaok.or.kr	02-2170-6013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www.ampcc.go.kr	02-794-0956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www.namk.or.kr	02-790-086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www.ncac.or.kr	02-3444-5910	



## ■ 지방의회 운영 관련

### ○ 개회·개의

- 「開會」란 의회가 집회되어 활동을 시작하였다는 의미로 사용되며 전체적인 회기가 시작됨을 강조하여 사용
- 「開議」란 회기 중에 당일의 본회의를 여는 것을 말함

### ○ 계류(繫留)

- 의회의 심의·의결 대상으로서 제안된 안건이 처리되지 못하고 위원회나 본회의에서 논의 중이거나 논의할 대상으로 놓여있는 상태

### ○ 발의와 제출

- 의원이 제안을 낼 때에는 「發議」라고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안을 낼 때에는 「提出」이라 함

### ○ 심의와 심사

- 「審議」와 「審査」는 의회에서 안건을 결정하기 위해서 즉 의결하기 위해서 논의하는 것을 말함
- 심의는 본회의 논의 단계를 말하고 심사는 위원회 논의 단계를 말하는 것으로 구별함

### ○ 산회(散會)와 유회

- 산회는 개회나 개의의 반대의 개념으로 그날의 회의를 마치는 것, 즉 의사 일정에 올린 안건의 의사가 끝났을 때 산회를 선포
- 유회란 개의 예정 시간으로부터 일정시간이 지나도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면 당일 회의를 열지 못하는 경우를 말함

### ○ 연석회의(連席會議)

- 2개 이상의 위원회가 한 회의장에 모여서 의견을 교환하는 것을 「연석회의」라 하며 단순히 의견을 서로 교환하는 회의이지 결정을 위한 회의가 아니므로 토론이나 표결은 할 수 없음

### ○ 재의요구(再議要求)

- 지방의회가 결정, 즉 의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낸 조례안이나 예산안 등이 법령에 위반되고 있거나 이의가 있거나 지출할 수 없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거나, 또는 공공의 이익을 크게 해친다고 판단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다시 심의해 달라고 의회에 돌려 보내는 것을 말함

### ○ 제안설명(취지설명)

- 의안을 발의 또는 제출한 자가 심사(심의)의 맨처음 단계에서 의안의 발의(제출) 배경 등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을 설명하여 심사에 참고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취지 설명이라고도 함)

### ○ 축조심사(逐條審査)

- 의안 심사 방법의 한 형태로서 의안의 한 조항씩 낭독하면서 의결하는 것을 말함
- 축조심사는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어 구분이 가능한 조례안 또는 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소관 부서나 부문별로 하나씩 의결해 나갈 수 있음

### ○ 5분 자유발언

- 심의중인 의안이나, 청원, 기타 관심 사안에 대하여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5분이내의 발언내용을 작성하여 본회의 개시까지 의장에게 신청

## ■ 지방재정 관련

### ○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재정자립도** 재정수입의 자체 충당능력을 나타내는 세입분석지표로, 일반회계의 세입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로 측정하며 비율이 높을수록 세입징수기반이 좋은 것을 의미

**재정자주도** 지방교부세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자원 활용 능력을 표시할 수 있는 지표

### ○ 지방세 비과세·감면

**비과세** 과세요건에서 제외하여 납세의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과세제외 또는 과세금지라고 함(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감 면**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나, 정책적 목적에 따라 납세 의무를 소멸시켜 주는 것

○ 특별교부세

- 보통교부세 산정시 반영할 수 없었던 지방자치단체별 구체적인 사정, 지방재정 여건 변동,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재원
  - ※ 지역현안수요 40%, 시책수요 10%, 재난안전수요 50%

○ 분권교부세

- 재정분권 차원에서 국고보조 149개 사업(9,581억원)을 지방에 이양하면서 필요한 재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신설('05년)
- 내국세 총액의 0.94%('14년 1.69조원)

○ 긴급재정관리제도

-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아주 예외적인 재정위기 상황 발생시 주민서비스 중단·축소 등을 예방하기 위한 재정회생 제도
  - ※ 민간의 '파산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현행 재정위기관리제도의 연장선에서 추진

■ 기타

○ 기관위임사무

- 국가 또는 상급 지방자치단체인 시·도가 처리해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처리하도록 위임한 것을 말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그 사무를 위임한 국가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하급기관의 위치에서 처리하게 됨
- 기관위임 사무에 대해서는 위임한 기관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비도 국가나 상급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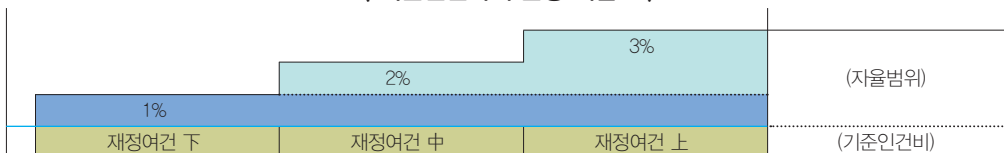
○ 기준인건비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성 경비의 총액 규모인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정원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제도('14.3.5 도입)

기준인건비는 인구, 재정여건, 하부기관수 등에 따라 산정

- 현안수요 대처를 위해 자율범위를 1~3% 추가 부여
  - \* '14.1월부터 자율범위 1% 부여, '14년 하반기에 자율범위 2~3% 부여예정

〈 기준인건비제 운영 개념도 〉



## 03

## 공직선거법상 지방의회의원의 주요 행위기준

## ■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lt;공선법 제85조②항&gt;

- 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한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 공무원으로서 신분상 또는 직무상의 지휘·감독권이 미치는 사람에게 선거운동을 하였거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됨

## ■ 의정활동 등 보고 제한&lt;공선법 제111조&gt;

-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 행위를 불문하고 인터넷에 의정활동 보고서를 게재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보고 금지

## 의정활동 보고

- ❖ 지방의회의원은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인쇄물, 녹음·녹화물 및 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 인터넷, 문자메시지,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 또는 축사·인사말(게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있음

## ■ 기부행위 금지&lt;공선법 제112~114조&gt;

조문	주 체	제한기간	주관적 요건	제 한 내 용
법 §113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 포함)·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이 표에서 같음)와 그 배우자	상시	선거에 관한 여부 불문	일체의 기부행위 금지 (주례행위 포함)
법 §114	정당(당원협의회와 창당준비위원회 포함)·정당 선거사무소의 소장, 후보자나 그 배우자의 가족, 선거사무관계자,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	선거 기간 전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 금지
		선거 기간 중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 불문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 금지

[참고]  안은 상임위가 미설치된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 한함

### 시·도의회 회의규칙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3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의진행과 내부 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등록)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임기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처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 제3조 (의석배정)

- 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 ② 총선거후 의장이 선출되기전의 의석은 사무처장이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 제4조 (개회식)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 제5조 (선서)

의원은 임기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 시·군·자치구의회 회의규칙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시(도)○○구(시·군)의회

##### 제2조 (등록)

의회사무국(사무과)

##### 제3조 (의석배정)

- ① 좌 동

##### 제3조 (의석배정)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를 정한다. 다만, 총선거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사무과장)이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 ② \_\_\_\_\_사무국(과)장이

##### 제4조 (개회식)

- 좌 동

##### 제5조 (선서)

- 좌 동

**제6조 (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7조 (청가 및 결석)**

- 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의원이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 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 ④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을 요할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2장 의장과 부의장****제8조 (의장·부의장의 선거)**

-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 ②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으로 한다.
- ③ 제2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은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④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후 전 각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각각 선거한다.

**제9조 (의장·부의장의 임기)**

- ① 의장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제6조 (의회의 개폐선포)**

좌 동

**제7조 (청가 및 결석)**

좌 동

**제2장 의장과 부의장****제8조 (의장·부의장의 선거)**

좌 동

**제9조 (의장·부의장의 임기)**

좌 동

- ② 의원 총선거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제10조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1조 (임시의장의 선거)**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 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제12조 (의장·부의장의 사임)**

-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3장 회 의**

**제1절 회의의 개폐**

**제13조 (회기)**

- ① 의회의 회기는 의결로 이를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 ②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이를 정하여야 한다.
- ③ 회기는 집회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 ④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제14조 (개의회)**

본회의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개회시를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제15조 (회의에 관한 선포)**

- ① 개의·정회·산회 및 휴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 ② 의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개회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 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휴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10조 (임시의장의 선거)**

좌 동

**제11조 (의장·부의장의 사임)**

좌 동

**제3장 회 의**

**제1절 회의의 개폐**

**제12조 (회기)**

좌 동

**제13조 (개의회)**

본회의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그 개회시를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제14조 (회의에 관한 선포)**

- ① 좌 동
- ② ——— 제13조 —————  
—————  
—————  
————— .

- ③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16조 (휴회)**

- ① 의회는 의결로 시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 ② 휴회중이라도 시장(도지사)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제2절 의사일정**

**제17조 (의사일정의 작성)**

- ① 의장은 개의일시·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그러나 재개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는 의장이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 ③ 의장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제18조 (의사일정의 변경)**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9조 (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제3절 의안 및 동의**

**제20조 (의안의 제출·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도지사)·교육감·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의원 10인이상의 연서로 발의

- ③ 좌 동

**제15조 (휴회)**

- ① 좌 동
- ② 좌 동

**제2절 의사일정**

**제16조 (의사일정의 작성)**

- ① 좌 동
- ② 좌 동
- ③ 좌 동

**제17조 (의사일정의 변경)**

\_\_\_\_\_ (또는 의원 10인 이상) \_\_\_\_\_  
 \_\_\_\_\_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_\_\_\_\_  
 \_\_\_\_\_  
 \_\_\_\_\_  
 \_\_\_\_\_.

**제18조 (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좌 동

**제3절 의안 및 동의**

**제19조 (의안의 제출·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



한다.

### 제21조 (상임위원회 회부)

-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 ②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 제22조 (특별위원회 회부)

- ① 의원의 동의를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 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 제20조 (상임위원회 회부)

- ① 좌 동

#### 제20조 (의안의 회부)

- ① 의장은 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 후 본회의에서 심사·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의원의 동의를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한다.
- ②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③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④ 제1항과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 ⑤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② 좌 동

### 제20조의 2 (특별위원회 회부)

- ① 좌 동

- ② 좌 동

\* 본조는 상임위가 미설치된 의회에는 적용이 안되는 규정임

**제23조 (심사기간)**

- ①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24조 (위원회의 제출의안)**

위원회가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5조 (동의를 의제성립)**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의 1인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26조 (수정동의)**

-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이상 또는 의원 13인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없이 의제가 된다.
- ③ 위원회는 소관사항외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 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제27조 (의안·동의를 철회)**

- 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는 발의자 전원,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는 동의한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② 시장(도지사)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시장(도지사) 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0조 3 (심사기간)**

- ① 좌 동
- ② 좌 동

\* 본조는 상임위가 미설치된 의회에는 적용이 안되는 규정임

**제20조의 4 (위원회의 제출의안)**

좌 동

\* 본조는 상임위가 미설치된 의회에는 적용이 안되는 규정임

**제21조 (동의를 의제성립)**

좌 동

**제22조 (수정동의)**

- ① 좌 동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좌 동

- ③ 좌 동

- ④ 좌 동

**제23조 (의안·동의를 철회)**

- ① 좌 동

- ② 시장(군수·구청장) \_\_\_\_\_  
 시장(군수·구청장) 제출의 \_\_\_\_\_  
 \_\_\_\_\_

제28조 (번안)

번안동의는 본회의에서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의 동의로 발의한다. 그러나 본회의에 있어서는 안전이 시장(도지사)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 있어서는 본회의에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제29조 (안건심의)

- ①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하여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제안자가 시장(도지사) 또는 교육감일 경우 취지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할 수 있다.
-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건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제30조 (재회부)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31조 (의안의 정리)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문구·숫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32조 (의안의 이송)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시장(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이송한다.

제4절 발 언

제33조 (발언의 허가)

- ①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제24조 (번안)

\_\_\_\_\_

\_\_\_\_\_

\_\_\_\_\_

\_\_\_\_\_시장(군수·구청장)\_\_\_\_\_

\_\_\_\_\_

\_\_\_\_\_

제25조 (안건심의)

- ①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제안자의 취지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하되,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제안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일 경우 \_\_\_\_\_
- ③ 좌 동

제25조의 2 (재회부)

좌 동

\* 본조는 상임위가 미설치된 의회에는 적용이 안되는 규정임

제26조 (의안의 정리)

좌 동

제27조 (의안의 이송)

\_\_\_\_\_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송한다.

제4절 발 언

제28조 (발언의 허가)

좌 동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 ③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 제34조 (발언의 장소)

- ① 발언은 등단하여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 ②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등단하도록 할 수 있다.

#### 제35조 (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 제36조 (의제와 발언의 금지)

- ① 모든 발언은 의제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 제37조 (발언회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8조 (발언시간의 제한)

- ①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보충발언·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 제39조 (보충보고)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의견자가

#### 제29조 (발언의 장소)

좌 동

#### 제30조 (발언의 계속)

좌 동

#### 제31조 (의제와 발언의 금지)

좌 동

#### 제32조 (발언회수의 제한)

좌 동

#### 제33조 (발언시간의 제한)

좌 동

#### 제34조 (보충보고)

좌 동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 (토론의 통지)**

-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제41조 (의장의 토론참가)**

-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 ② 제1항에 의해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제42조 (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 ①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 ② 의원 2인이상의 발언이 있을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 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5절 표 결**

**제43조 (표결의 선포)**

-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
-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제44조 (표결의 참가)**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제45조 (의사변경의 금지)**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제35조 (토론의 통지)**

좌 동

**제36조 (의장의 토론참가)**

좌 동

**제37조 (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좌 동

**제5절 표 결**

**제38조 (표결의 선포)**

좌 동

**제39조 (표결의 참가)**

좌 동

**제40조 (의사변경의 금지)**

좌 동

**제46조 (표결방법)**

-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
- ②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 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 ④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 투표로 한다.

**제47조 (투표절차)**

- ① 투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 ② 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중에서 약간인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에 참여하여 투·개표상황을 점검 계산하게 한다.
- 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은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④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제48조 (수정안의 표결순서)**

- ① 동일의제에 대하여 수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수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제49조 (표결결과 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제6절 회의록****제50조 (회의록의 작성)**

-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제41조 (표결방법)**

좌 동

**제42조 (투표절차)**

좌 동

**제43조 (수정안의 표결순서)**

좌 동

**제44조 (표결결과 선포)**

좌 동

**제6절 회의록****제45조 (회의록의 작성)**

좌 동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2. 개회·회의중지·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
  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변동
  7. 제반보고사항
  8. 의안의 발의·제출·회부·환부·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9. 부의안건과 그 내용
  10. 의사
  11. 표결 및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
  12. 서면질문과 답변서
  13. 의원의 발언 보충서
  14. 기타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제51조 (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 ① 회의록에는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인이상의 의원 및 사무처장이 서명·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동안만 서명·날인한다.
- 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

**제52조 (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기타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분된 날의 다음날 오후 5시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 ②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제53조 (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한다. 그러나,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 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의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복사 등을 신청한 때

**제46조 (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 ① \_\_\_\_\_  
 \_\_\_\_\_의원 및 사무국장(사무과장)\_\_\_\_\_  
 \_\_\_\_\_.
- ② 좌 동

**제47조 (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좌 동

**제48조 (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 ① \_\_\_\_\_  
 \_\_\_\_\_  
 \_\_\_\_\_  
 발언자와 협의하여\_\_\_\_\_  
 \_\_\_\_\_
- ② 좌 동

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제2항에 의하여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제·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 ⑤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 제4장 위원회

### 제54조 (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 제55조 (본회의중 위원회 개최)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최할 수 없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6조 (위원회에서의 동의)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를 요하지 아니하며 동의자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 제57조 (위원회의 제안)

-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기타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 제58조 (위원회의 심사)

-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전문위원을 두는 경우)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좌 동

④ 좌 동

⑤ 좌 동

## 제4장 위원회

### 제49조 (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좌 동

### 제50조 (본회의중 위원회 개최)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최할 수 없다.

### 제51조 (위원회에서의 동의)

좌 동

### 제51조의 2 (위원회의 제안)

-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기타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 ② 좌 동

### 제52조 (위원회의 심사)

① 좌 동

② \_\_\_\_\_  
 \_\_\_\_\_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_\_\_\_\_



- ③ 제1항의 제안자가 시장(도지사) 또는 교육감일 경우나 제2항의 경우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59조 (위원의 발언)**

-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 등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위원은 위원회에서의 질의를 1문 1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60조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위원회는 안건에 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제61조 (위원회의 의사·의결정족수)**

-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62조 (연석회의)**

- ①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
- ②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 ③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63조 (공청회)**

-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 ③ 제1항의 제안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일 경우나 —  
\_\_\_\_\_  
\_\_\_\_\_  
\_\_\_\_\_

**제53조 (위원의 발언)**

- ① 좌 동
- ② 좌 동

**제54조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좌 동

**제55조 (위원회의 의사·의결정족수)**

- ① 좌 동
- ② 좌 동

**제55조의 2 (연석회의)**

- ① 좌 동
- ② 좌 동
- ③ 좌 동

\* 본조는 상임위가 미설치된 의회에는 적용이 안되는 규정임

**제56조 (공청회)**

- ① 좌 동
- ② 좌 동
- ③ 좌 동
- ④ 좌 동

한다.

#### 제64조 (심사보고서의 제출)

-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의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도 있다.

#### 제65조 (위원장의 보고)

- ①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 ② 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하는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가할 수 없다.

#### 제66조 (위원회 회의록)

-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의·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성명
  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공무원·진술인의 성명
  6. 심사안건명
  7. 의사
  8. 표결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기타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에서의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아니된다.
-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간사가 서명·날인한다.

#### 제57조 (심사보고서의 제출)

- ① 좌 동
- ② 좌 동
- ③ 좌 동

#### 제58조 (위원장의 보고)

- ① 좌 동
- ② 좌 동
- ③ 좌 동

#### 제59조 (위원회 회의록)

- ① 좌 동
- ② 좌 동
- ③ 좌 동

제67조 (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회의록 기타 비밀참고 자료의 열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감사 또는 조 사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제5장 예산안과 결산심사

제68조 (예산안 심의)

- ①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시장(도지사)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 ③ 의장은 예산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69조 (예산안의 수정동의)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또는 의원 17인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70조 (예산안의 의결)

- ①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 ② 예산 각 부분의 의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제71조 (예산안의 재심요구)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하여 기간을

제60조 (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좌 동

제5장 예산안과 결산심사

제61조 (예산안 심의)

- ① \_\_\_\_\_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_\_\_\_\_  
\_\_\_\_\_.
- ② 좌 동
- ③ 좌 동

제61조 (예산안 심의)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되는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의 심사기간을 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제62조 (예산안의 수정동의)

좌 동

제62조(예산안 심의)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63조 (예산안의 의결)

- ① 좌 동
- ② 좌 동

제64조 (예산안의 재심요구)

좌 동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 제72조 (결산의 심사)

- ①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하게 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한다.
- ③ 의장이 결산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는 제68조제3항을 준용한다.

## 제6장 시장(도지사)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 제73조 (시장·도지사 등의 출석요구)

-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시장(도지사)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의원 10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시장(도지사)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장(도지사)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시장(도지사)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 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전까지 시장(도지사)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 제74조 (시장·도지사에 대한 서면질문)

- ① 의원이 시장(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 제65조 (결산의 심사)

- ① 좌 동

#### 제65조(결산의 심사)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고 예결위원회의 심사가 끝난 후 그 결과를 보고받아 본회의에 부의한다.

- ② 좌 동

- ③ \_\_\_\_\_  
제61조제3항을 준용한다.

## 제6장 시장(도지사)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 제66조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출석요구)

- ① \_\_\_\_\_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_\_\_\_\_  
\_\_\_\_\_ 또는 의원 10인 이상 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② \_\_\_\_\_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_\_\_\_\_
- ③ \_\_\_\_\_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_\_\_\_\_ 시장(군수·구청장)이 -  
\_\_\_\_\_  
\_\_\_\_\_  
\_\_\_\_\_
- ④ \_\_\_\_\_  
\_\_\_\_\_  
\_\_\_\_\_  
\_\_\_\_\_ 시장(군수·구청장)에게 \_\_\_\_\_.

### 제67조 (시장·도지사에 대한 서면질문)

- ① \_\_\_\_\_ 시장(군수·구청장)에게 \_\_\_\_\_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시장(도지사)에게 이송한다.

- ② 시장(도지사)은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 제75조 (시장·도지사 등의 발언)

시장(도지사) 또는 관계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7장 사직과 자격심사

### 제76조 (사직)

- ①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 ③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 제77조 (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 ① 의장은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자격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분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 ② 피심위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기타 사고에 의하여 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할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78조 (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 ①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 ② 징계자격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
- ③ 징계자격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

\_\_\_\_\_

\_\_\_\_\_시장(군수·구청장)에게 \_\_\_\_\_.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_\_\_\_\_
- \_\_\_\_\_
- \_\_\_\_\_.
- ③ 좌 동

### 제68조 (시장·도지사 등의 발언)

시장(군수·구청장)은 \_\_\_\_\_

\_\_\_\_\_

## 제7장 사직과 자격심사

### 제69조 (사직)

- ① 좌 동
- ② 좌 동
- ③ 좌 동

### 제70조 (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 ① 좌 동
- ② 좌 동

### 제71조 (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 ① 좌 동
- ② 좌 동
- ③ 좌 동

출한다. 이 때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 ④ 자격상실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

### 제79조 (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 ① 징계자격특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 ②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징계자격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 ③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 제8장 질서

### 제80조 (경호)

-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경찰관서에 대하여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단독으로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밖에서 경호한다.

### 제81조 (회의의 질서유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잡지·간행물 기타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녹화·촬영행위
4. 음식물의 섭취와 깃연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반입
6. 기타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 ④ 좌 동

### 제72조 (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 ① 좌 동
- ② 좌 동
- ③ 좌 동

## 제8장 질서

### 제73조 (경호)

- ①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단독으로

- ② 좌 동

### 제74조 (회의의 질서유지)

좌 동

**제82조 (회의장 출입의 제한)**

회의장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를 필요  
요한 자와 의장이 허가한 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제83조 (방청의 허가)**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제84조 (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의 종별)**

- ① 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
- ② 방청권의 종별은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장기방  
청권으로 한다.

**제85조 (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

- ①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장이 그 수를  
정하여 이를 교부한다.
- ②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기타 단체의 신청에 의하  
여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그 대  
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
- ③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며, 장기방청  
권을 교부받은 자는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할 수  
있다.
- ④ 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성명·직업 및 연령 등 소  
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6조 (방청의 제한)**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 2. 주기가 있는 자
  - 3. 정신에 이상이 있는자
  - 4.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  
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자
- ② 의장이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③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  
한할 필요가 있거나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자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87조 (방청인의 준수사항)**

-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 1. 회의장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 2. 모자·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 3.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제75조 (회의장 출입의 제한)**

좌 동

**제76조 (방청의 허가)**

좌 동

**제77조 (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의 종별)**

- ① 좌 동
- ② 좌 동

**제78조 (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

- ① \_\_\_\_\_ 사무국장(사무과장)이 —  
\_\_\_\_\_
- ② 좌 동
- ③ 좌 동
- ④ 좌 동

**제79조 (방청의 제한)**

- ① 좌 동.
- ② 좌 동
- ③ 좌 동

**제80조 (방청인의 준수사항)**

좌 동

4. 음식물의 섭취나 끄연 행위
5. 신문 기타 서적류의 열독행위
6. 의장의 허가없는 녹음·녹화·촬영행위
7.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8.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제88조 (녹음·녹화 등)**

-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하여 회의장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에서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회기초에 허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있어서는 허가를 얻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 ③ 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 내에서의 녹음·녹화·촬영은 절차상 제한없이 할 수 있다.
- ④ 제1항, 제3항의 녹음 등을 하는 자는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장 징계**

**제89조 (징계의 요구와 회부)**

- ① 의장은 법 제7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 ② 위원장은 소속위원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의원 10인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위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 ④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제81조 (녹음·녹화 등)**

- ① 좌 동
- ② 좌 동
- ③ 좌 동
- ④ 좌 동

**제9장 징계**

**제82조 (징계의 요구와 회부)**

- ① 좌 동
- ② 좌 동
- ③
- ④ 좌 동

또는 의원 10인이상의



- ⑤ 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징계대상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

**제90조 (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 ① 제89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동조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동조 제5항의 본회의의 부의시한 또한 같다.
- ②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기간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회의의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91조 (의사의 비공개)**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92조 (심문 및 변명)**

- ① 징계자격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 ② 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93조 (징계의 의결과 선포)**

- ① 의장은 징계자격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 ②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

부칙

- ⑤ 좌 동

**제83조 (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 ① 제82조제1항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 ② 제82조제2항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제84조 (의사의 비공개)**

- 좌 동

**제92조 (심문 및 변명)**

- ① 좌 동
- ② 좌 동

**제93조 (징계의 의결과 선포)**

- ① 좌 동
- ② 좌 동

부칙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 가이드



지방의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기본사항 안내서

- 발 행 처 : 안전행정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발 행 일 : 2014. 10.
- 주 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전 화 : 02) 2100-3867